

기획조사 06-079

2006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7년도 전망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기획조사 06-079

2006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7년도 전망

목 차

[요 약]	1
1. 전세계 수입규제 현황	3
2. 2006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14
가. 총 괄	14
나. 국별 동향	18
3. 2007년 국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39
가. 총 괄	39
나. 국별 전망	40
□ 첨 부 : 국별/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	61

요 약

1. 전세계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

- WTO 체제 출범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총 42개국이 2,93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2001년 이후 조사개시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임.
- 2006년 상반기 조사개시 건수(87건)는 전년동기대비 18건이 감소했으나 확정조치(71건)는 전년동기에 비해 16건이 증가함.
- 인도 등 개도국의 반덤핑 제소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500건)과 한국(223건)이 반덤핑조사 최대 피소국임.

□ 세이프가드

- 2002년 34건(조사건수)을 정점으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철회로 대폭 감소추세를 보였음. 2006년은 터키의 발동조치 증가로 다소 상승
- 1위 발동국 인도를 비롯해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주로 활용

□ 반보조금/상계관세

- '95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조사개시 183건, 발동조치 113건이며, 올 상반기 조사건수 1건임.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상계관세는 주로 미, EU, 캐나다로부터 부과
-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가(NME)에 상계관세 조사 증가 전망

2. 2006년도 對韓 수입규제 동향

- 규제건수 : 2006년 19개국으로부터 총 110건(조사중 포함)
- 133건('03) → 130건('04) → 120건('05) → 110건('06)
- 규제형태별 : 반덤핑 99건, 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3건
- 품목별 : 석유화학제품 42건, 철강제품 28건, 섬유류 19건, 전기전자 6건,
기타 15건
- 국별 : 중국 21건, 인도 19건, 미국 18건, 호주 9건, EU·터키 6건

- 신규 피소건 : 총 11건
 - 품목별 : 철강 3건, 화학 3건, 전기전자 및 섬유 1건, 기타 3건
 - 피소형태 : 반덤핑 9건,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상계관세 1건
 - 국별 : 선진국 4건, 개도국 7건(64%), 인도가 2건 제소
 - 2006년 중 규제 종료건수 : 21건

3. 2007년도 對韓 수입규제 전망

- 수입규제조치 증가율 둔화 전망
 - WTO 정착, FTA 체결확대로 수입규제조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한국 제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가능성도 낮음.
 - 그러나 일부국가에서 특정 수입급증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가능성 상존함.
 -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동반규제 가능성 주의
- 미국
 - 민주당 집권 이후 보호무역주의 대두 우려
 - 대미수출 급증 섬유·의류품목 수입규제 가능(기능성 패브릭제품 주의)
 - USTR과 의회, 원심 제로잉 관행 변경범위 및 시기 논란
- 중국
 - 2007년 통상정책이 수입확대-수출급증세 조절에 역점을 둘 예정이나 무역불균형 심화, 내수시장 공급과잉 등으로 수입규제 가능성 상존
 - 2003년 이후 화공제품에 반덤핑조사 집중. 2007년에도 규제 우려
 - 철강은 강관의 재고확대 가능성으로 관련제품 수출시 주의 필요
- EC
 - 무역에 노동과 환경 연계한 통상장벽 강화 신보호주의적 정책 추진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5년) 단축, 대상 축소 검토
 - 수출급증 평판디스플레이 반덤핑조사 제기 우려
 - 우회덤핑방지조사 강화추세
- 기타
 - 남아공은 석유화학·섬유제품, 터키·인도·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는 의류섬유제품, 이집트는 자동차부품과 석유화학제품에 수입규제 가능성 높음.

1. 전세계 수입규제 현황

□ WTO 체제 출범 이후 200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3,276건이며, 발동조치건수는 2,064건임.

< WTO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상계관세	총 계
조사개시	2,938	155	183	3,276
발동조치	1,875	76	113	2,064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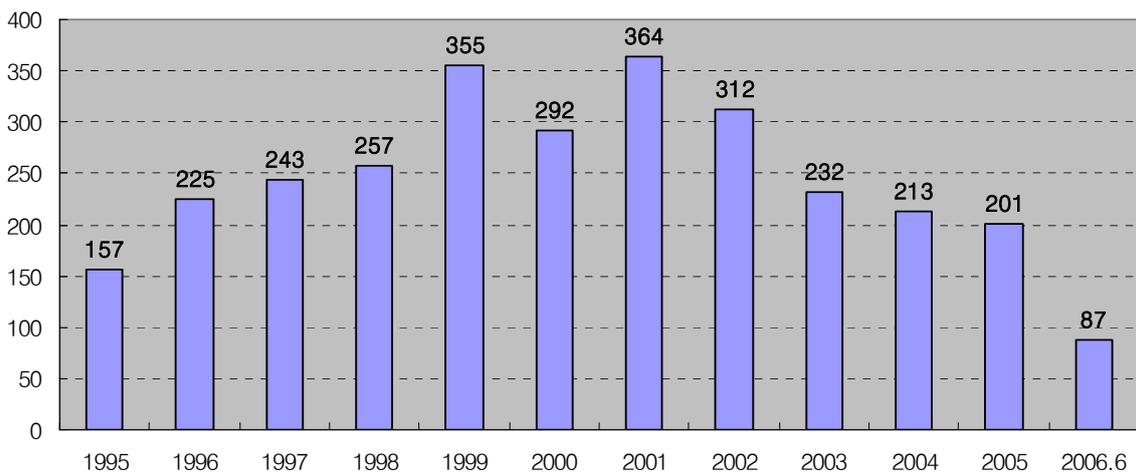
주 : 반덤핑 '95.1.1~'06.6.30, 세이프가드 '95.1.1~'06.10.23, 상계관세 '95.1.1~'06.6.30 현재

[반덤핑]

□ 반덤핑 조사개시 감소추세

○ 199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11년 반 동안 전체 42개국¹⁾이 총 2,93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는데, 2001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추이 > (단위 : 건)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1) EU는 1개국으로 간주하나, 슬로베니아·폴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은 EU 가입이전 반덤핑조치를 발동한 것을 감안 개별국으로 집계함. 2005년에 비해 요르단이 2006년 반덤핑 조사개시로 1개국 추가됨.

- 2006년 상반기 반덤핑 조사건수는 87건으로 전년동기 105건에 비해 18건이나 감소했음. 반면, 반덤핑 확정조치는 71건이 이뤄졌는데, 이는 전년동기 55건 조치에 비해 16건(29%)이 증가한 것임.
-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국가수는 2006년 6월 현재 20개국으로, 2001년 27개국을 정점으로 2003년 24개국, 2005년 19개국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 전체 반덤핑 조사건수(2,938건) 대비 확정조치 건수(1,875건)의 판정비율은 64%로 나타남.

□ 인도 등 개도국 반덤핑 제소 활발

- 2002~2006.6 최다 반덤핑 조사개시국은 인도로 총 196건을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 인도도 최다 조사국으로 전년동기 14건보다 증가한 20건을 기록함.
- 2002~2006년 6월간 10대 발동국 중심, 반덤핑 조사개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국가의 반덤핑조사 개시현황 >

순위	2002		2003		2004		2005		2006.1-6		2002~'06.6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1	인도	81	인도	46	EC	30	인도	28	인도	20	인도	196
2	미국	35	미국	37	중국	27	EU	25	EC	17	미국	110
3	중국	30	중국	22	미국	26	중국	24	호주	9	중국	106
4	태국	21	한국	18	터키	25	남아공	23	아르헨 터키 인니	5	EC	99
5	EC	20	캐나다	15	인도	21	파키스탄	13			터키	71
6	터키	18	멕시코	14	아르헨	12	미국 터키 아르헨 이집트	12			호주	49
7	호주	16	인니	12	캐나다	11			캐나다	4	아르헨	44
8	아르헨	14	터키	11	호주	9	호주 멕시코	7	멕시코 중국 뉴질랜드	3	남아공	43
9	페루	13	호주 남아공	8	브라질	8					멕시코	40
10	멕시코	10			페루	7	호주 멕시코	7			캐나다	36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국별로 살펴보면, 인도, EC, 호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는 전년동기보다 반덤핑조사 개시건수가 증가했으나, 터키는 감소했음.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은 상반기중 전년에 비해 반덤핑조사 개시가 1건도 없었음.
- 반덤핑 조사개시 87건 중 31건이 선진국, 56건(64%)이 개도국, 규제조치 71건중 9건이 선진국, 62건(87%)이 개도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인도 등 개도국들이 반덤핑 조사 및 규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

□ 한국, 반덤핑 피소 세계2위

- 세계적으로 반덤핑조사 개시건수는 대체로 감소세에 있으나,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국가의 반덤핑 조사건수는 크게 낮아지지 않음.
-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10대 피소국을 중심으로, 반덤핑조사 피소현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국가의 반덤핑조사 피소현황 >

순 위	2002		2003		2004		2005		2006.1-6		2002~'06.6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국명	건수
1	중국	51	중국	52	중국	49	중국	56	중국	32	중국	240
2	한국	23	미국	21	한국	24	인니 말련 인도	14	대만	6	한국	80
3	러시아	18	한국	17	대만	21			미국		69	
4	대만	16	일본	16	미국	14	태국 대만	13	태국	5	미국	65
5	인도		인도	14	태국 브라질 일본	9			한국	4	인도	55
6	일본	13	대만	13			인도 인니 러시아	8	미국		12	일본
7	인니	12	EC	10	인도 인니 러시아	8			한국	7		인도 브라질
8	태국		인니	8			인도 인니 러시아	8	미국		7	
9	미국	말련	7		인도 인니 러시아	8			일본	7		인도 브라질
10	EC	10		태국			7	인도 인니 러시아	8		EU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 1995년 이후 전체 2,938건 중 500건이 중국을 상대로 개시된 조사이며, 올 상반기 기도 중국이 총 87건 중 32건(37%)으로 제1 피소국임.

- 반면, 중국은 2006년 상반기 최다 반덤핑 조치 발동국이기도 함. 전년동기 10건 보다 많은 15건을 발동조치 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전체 2,938건 중 223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피소됨. 우리나라의 피소건수는 2003년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다 2004년에 잠시 증가(24건)했으나, 2005년에는 다시 크게 감소(12건)했음.

□ 반덤핑 조사건수를 대상품목별로 보면, 화학제품(플라스틱/고무 포함), 철강/금속, 의류/직물 등이 주된 타깃임.

< 품목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현황 >

	2002	2003	2004	2005	2006.6
화학	136(43.6%)	94(40.5%)	93(43.4%)	74(36.8%)	24(27.6%)
철강/금속	96(30.8%)	52(22.4%)	36(17.0%)	38(18.9%)	19(21.8%)
의류/직물	6(1.9%)	14(6.0%)	21(9.9%)	27(13.4%)	3(3.4%)
전기/전자	9(2.9%)	14(6.0%)	14(6.6%)	18(9.0%)	16(18.4%)
제지류	7(2.2%)	20(8.6%)	8(3.8%)	6(3.0%)	1(1.1%)

자료 : 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 WTO

주 : ()는 점유율

○ 2006년 상반기 화학제품(플라스틱/고무 포함)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반덤핑 발동조치 또한 총 71건 중 37건이 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류/직물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로 해제되는 섬유쿼터에 대비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급증했으나 2006년 상반기에는 3건으로 대폭 감소추세로 나타남.

[세이프가드]

- 1995년부터 2006년 10월 23일까지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건수는 총 155건이며, 이중 76건의 발동조치가 이뤄짐.
-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건수가 2002년 34건을 정점으로 매우 높았던 수준에서 2003년 15건, 2004년 14건, 2005년 7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6년은 13건으로 다시 증가함.

< 연도별 세이프가드 조사 및 발동 현황 >

(단위 : 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조사개시	2	5	3	10	15	25	12	34	15	14	7	13	155
SG발동	-	1	3	5	5	7	9	16	15	4	5	6	76

자료 : Committee On Safeguard Practice, WTO

주 : '06년 자료는 '06.10.23. 기준

- 2001년, 2002년에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의해 조사개시 건수가 급증했으나 2003년 이후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 철회로 감소추세가 이어짐.
- 세이프가드조치는 EU 등 전통적 반덤핑조치 활용국이 아닌, 개도국에서 주로 자국의 산업보호수단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을 보임.

<세이프가드 주요 발동국 현황>

(단위 : 건)

구분	인도	칠레	요르단	미국	터키	체코	에콰도르	한국	기타	계
조사개시	15	11	11	10	10	9	7	4	78	155
SG발동	8	6	5	6	6	5	3	2	35	76

자료 : Committee On Safeguard Practice, WTO

주 : 조사개시 및 발동건수 '95~'06.10.23 누계

- 1995년 이후 세이프가드 조사는 인도가 15건으로 가장 많이 개시했으며, 규제 조치도 76건중 8건을 발동했음. 뒤를 이어 칠레와 요르단이 11건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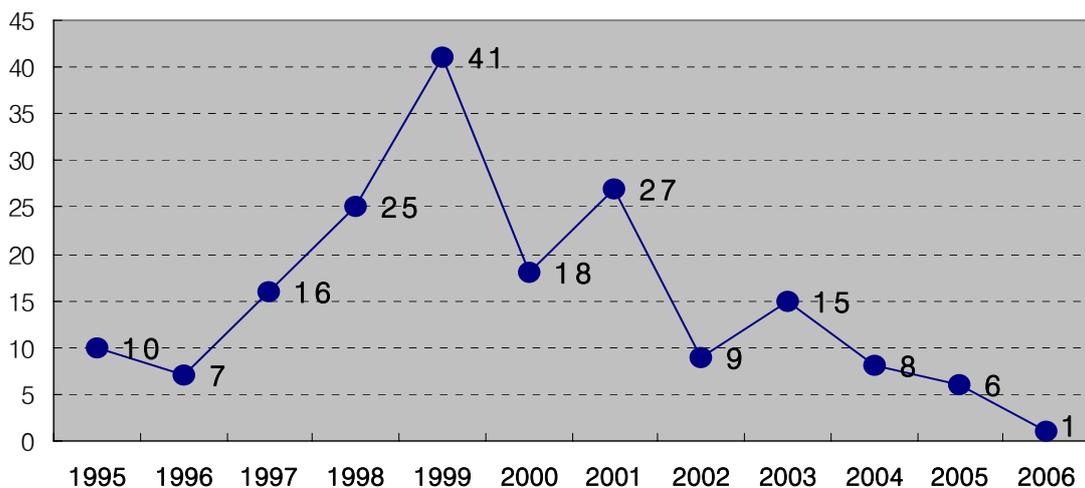
- 2006년 10월 23일 현재 8개국에서 13건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됐는데, 터키가 5건, 튀니지가 2건,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요르단, 파나마, 필리핀이 각 1건을 발동함.
- 터키는 조사개시 건수에 이어 발동조치 건수도 총 6건중 4건으로 1위를 기록. 이는 터키의 금융위기에 의한 자국산업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급증한 것임.
- 분야별로 보면 1995년 이후 현재까지 화학제품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제품도 뒤를 이어 21건으로 조사개시가 이뤄짐.
- 2006년에는 전기·전자제품에 4건, 세라믹과 신발류에 각 2건씩 조사개시됨.

[반보조금/상계관세]

- 1995년 이후 2006년까지 상계관세 조사건수는 183건이고, 113건이 발동조치됐음.
- 2003년 이후 신규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2006년 1건의 상계관세는 캐나다가 중국제품에 개시한 건수임.

< 연도별 상계관세 조사개시 현황 >

(단위 : 건)



자료 : 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WTO

주 : 2006년 자료는 2006.6.30. 기준

□ 우리나라, EU와 美에 집중 피소

- 조사건수는 미국이 72건으로 1위, EC 45건, 캐나다가 18건을 나타냈고, 발동건수는 미국이 45건, EC 23건, 캐나다 10건으로 선진국이 1, 2, 3위를 나타냄.
- 최대 피소국은 인도로 42건 조사를 받았으며, 25건의 상계관세가 부과조치됐음.
-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15건의 상계관세가 조사됐으며, 8건이 부과조치됨. 15건의 조사개시는 EC가 7건, 미국 6건, 일본과 남아공이 각 1건씩 부과했으며, 8건의 발동조치는 EC 2건, 미국 5건, 일본 1건임.

□ 상계관세 조치 발동건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반덤핑 조사는 수출국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나, 반보조금 조사는 수출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함께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님.
- 각국 정부도 자국산업을 지원할 때 특정성이 없는 형태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책을 개발, 상계관세조치 부과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음.
- 덤핑마진 계산보다 보조금 계산법은 아직 덜 발달된 상태이므로, 수입국 정부가 보조금 계산을 위해 덤핑마진 산정법을 원용할 경우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등 비시장 경제국가(NME ; non-market economy status)로 분류된 WTO 회원국의 경우에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상계관세 조사개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캐나다, EC 등은 수출국이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는 경우, 상계관세 조치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관점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베트남 WTO 가입이후 美 베트남산 섬유 반덤핑 움직임

□ 미국, 베트남 PNTR 승인

- 2006년 11월 7일 베트남 WTO 가입승인에 따라 2007년 1월 11일 공식 가입 됨. 이후 WTO 회원국들은 對베트남 섬유 쿼터를 해제해야 함.
- 2006년 12월 10일 미국은 베트남에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승인, 섬유쿼터 철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결정
 - 국회비준 과정중 Elizabeth Dole, Lindsey Graham 상원의원, 미국내 섬유업계 피해를 이유로 베트남 PNTR 지위부여 반대 및 섬유쿼터 연장요구
 - 이에, 미 상무부(DOC)는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입품에 대한 수입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대신 제안
 - 베트남산 섬유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덤핑의혹이 있을 경우 피해업체 요구 없이도 직권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

□ 수입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수입모니터링 기간
 - 베트남 WTO 공식가입일(2007.1.11)부터 현정권 임기말(2009.1.19)까지
- 주요 모니터링 품목
 - Trousers, shirts, underwear, swimwear and sweaters
- 운영방법
 - 매 6개월에 한번씩 수입통계 분석, 반덤핑 혐의 발견시 직권 발의로 반덤핑 조사 실시

□ 모니터링 및 반덤핑 직권조사에 대한 미국 수입업자 의견

- 조사당국이 직권 발의한 반덤핑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조치처럼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타협의 일환으로 사용된 적은 없음.
- 현재 미국내 의류 제조업체가 거의 전무한 가운데 베트남 의류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실시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
 -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미국 반덤핑규정의 위반이라고 주장
- 이러한 정부의 직권 발의 반덤핑 조치로 야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이에 기인한 리스크로 베트남에서 의류·섬유 수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 우리나라 투자기업에의 영향

- 반덤핑 조사를 조사당국 직권으로 실행하는 것 자체는 WTO에 위배되지 않음.
- 그러나 직권조사 과정에서 관계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반덤핑 조사개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기존의 쿼터제도에 비해 불확실성 증대
- 이로 인한 미국 바이어의 베트남산 섬유수입 축소 및 수입선 변경은 우리나라 베트남 현지 투자기업의 수출활동에 부정적으로 작용

무역구제조치(Trade Remedies)²⁾관련 다자 및 양자협상 논의동향

□ WTO/DDA 논의동향

- 2001년 도하각료회의에서 무역구제분야의 중요성 인식, 반덤핑 및 상계관세분야의 규범을 개선, 명료화 요구
-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 규범분야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그리고 명확성 강조
 - 반덤핑협정에 대한 논의 경우, 조사개시 및 그 과정, 덤핑 및 피해판정, 조치의 정도·범위·기간, 재심, 우회덤핑방지, 이용가능한 사실 등의 개선 및 명료화 독려
 - 보조금협정에 대한 논의 경우, 보조금·특정성·금지보조금·수출신용·혜택의 개념 명확화 독려
- 우리나라는 Zeroing³⁾금지·재심·최소부과원칙⁴⁾·제소적격 등을 우선 협상 핵심 이슈로 선정, 반덤핑 프렌즈 그룹과 함께 입장을 정리해 적극적 의견 개진 중
- 2006년 7월, WTO Lamy 사무총장의 협상중단(suspension)선언으로 논의가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으나, 11월 이후 비공식회의에서 기술적 문제 협의 중

2) 반덤핑관세조치, 상계관세조치, 세이프가드 조치 의미

3) 덤핑여부 판정 시 수출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마진을 '0'으로 처리, 전체 덤핑마진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음.

4)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덤핑마진과 피해마진 중 작은 것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원칙

□ 한·미FTA 논의 동향

-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해 2005년 20건, 2006년 18건의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등 對韓 주요 수입규제국이며, 반덤핑 등 무역구제관련 규범이 복잡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분야임.
-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산업피해 비누적⁵⁾, 다자간 SG제도 상호적용 배제, 양자간 SG제도 수준 설정문제 등이 우리의 주요 관심 이슈
- 지난 12월 4일 열린 제5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주요 5개 사항⁶⁾ 및 다자세이프가드 적용 배제에 대해 금년말 의회 보고에 포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미측에 강력히 요구
 - 미국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무역구제분과 협상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 협상 중단

5) 2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피해판정 시, 그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개별 수출국별로 피해발생 여부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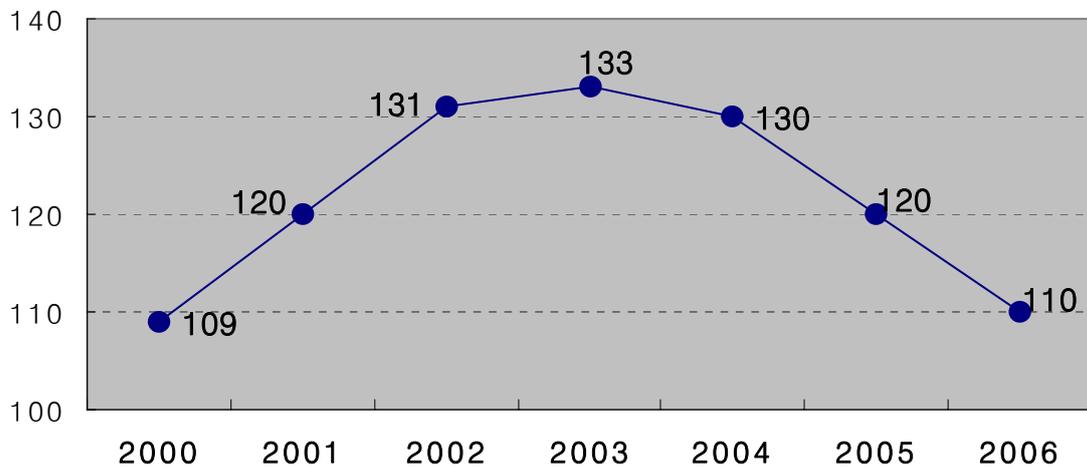
6) 비누적평가,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가격인상약속 활성화, 조사개시전 통지 및 사전협의, 이용가능한 사실 남용방지

2. 2006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가.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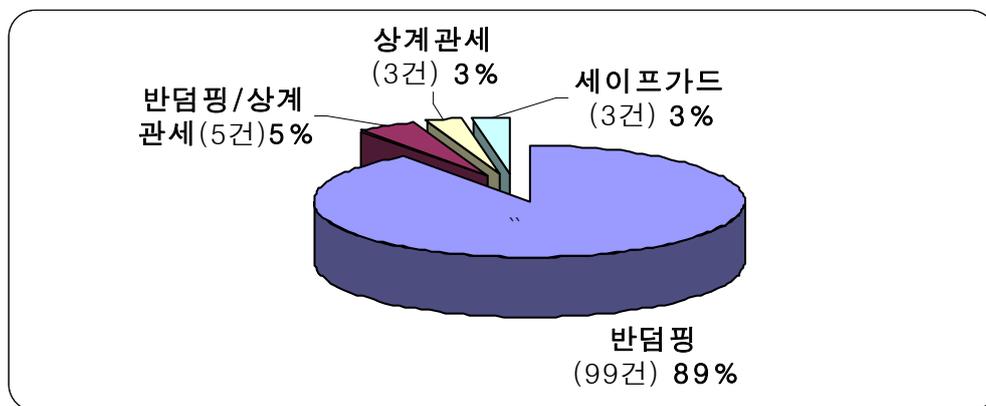
- 200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19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으로 부터 총 110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110건의 수입규제 중 규제 중인 것은 99건이며, 조사 중(최종판정 이전까지는 모두 조사 중으로 집계)은 11건임.

< 연도별 對韓 수입규제건수 추이 >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반덤핑/상계관세 5건, 세이프가드와 상계관세가 각 3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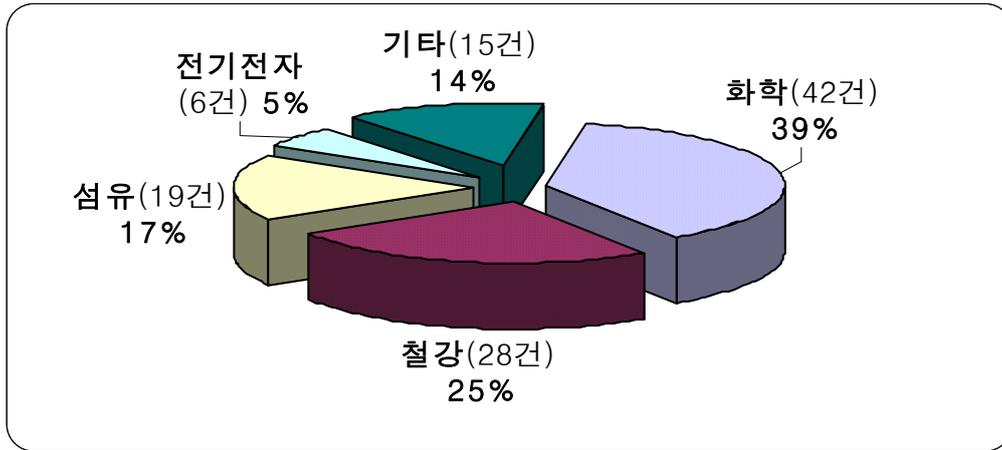
< 규제형태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제품이 28건, 섬유류 19건, 전기·전자 6건, 기타 15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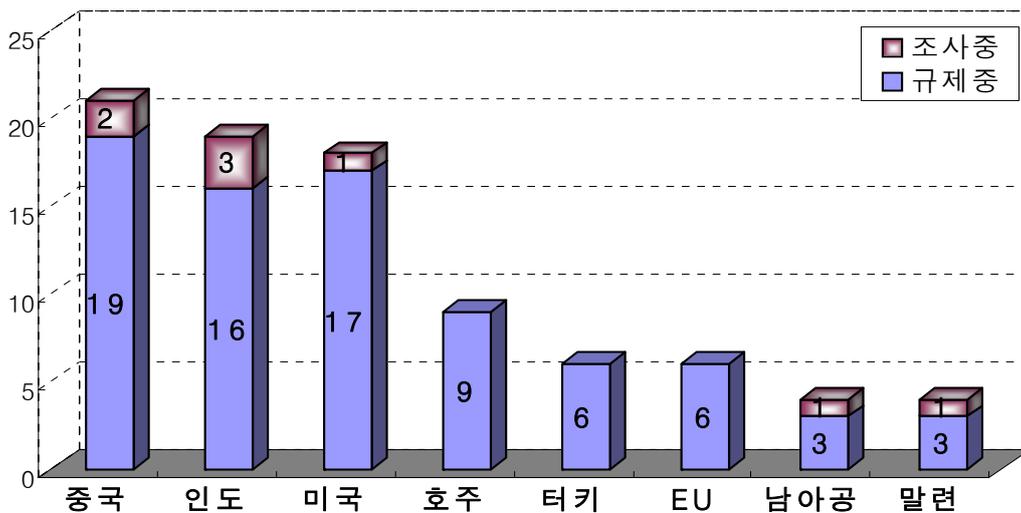
- 석유화학제품은 중국과 인도, 철강제품은 미국과 캐나다, 섬유류는 터키와 인도, 전기·전자는 EU에서 주로 규제를 받고 있음.

< 품목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



□ 국가별로는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19건, 미국 18건, 호주 9건, EU·터키 6건 순임.

<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



□ 2006년 신규 수입규제 피소 건수는 11건임.

< 2006년도 신규 피소 현황 >

연번	조사개시	피 소 품 목	제조국가	유형
1	1. 2	유리제품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2	1.11	컬러TV브라운관	EU	반덤핑
3	6. 8	동관 연결구류	캐나다	반덤핑
4	6. 8	구조물용 철강파이프(HSS)	호주	반덤핑
5	6.27	PVC	인도	반덤핑
6	7.27	골심지	말레이시아	반덤핑
7	8. 9	폴리에스테르원면	파키스탄	반덤핑
8	8.24	PS Plates	인도	반덤핑
9	8.30	비스페놀A	중국	반덤핑
10	9.12	D.O.P(Dioctyl Phthalte)	이집트	반덤핑
11	11. 6	도공상실지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 품목별로는 철강 3건, 화학 3건, 섬유 1건, 기타 3건, 전기전자 1건이며, 피소형태는 반덤핑 9건, 세이프가드 1건, 반덤핑/상계관세 1건임.
- 2006년 신규 수입규제를 제소한 국가는 10개국이며, 인도가 2건을 제소함. 11건의 신규 피소건수는 199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임.

< 연도별 신규 피소 건수 추이 >

해당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신규 피소건수	32	27	24	17	28	15	11
선진국	12	8	8	5	10	3	4
개도국	20	19	16	12	18	12	7

- 2000년 이후 개도국에 의한 신규 피소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2005년에는 80%를 나타냄. 2006년에는 이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개도국에 의한 신규 피소건수가 많은 특징을 보임.

□ 2006년 종료된 수입규제 조치는 총 21건임.

< 2006년 종료 수입규제조치 >

연번	제소국가	피 소 품 목	종료시기	유형
1	남아공	PVC	11.3 (‘06.6.15 소급적용)	반덤핑
2	남아공	카본블랙	7.14 (‘04.9.10 소급적용)	반덤핑
3	뉴질랜드	냉장고	6.10	반덤핑
4	뉴질랜드	세탁기	6.10	반덤핑
5	러시아	백열전구	1.28 (‘05.5 소급 철회)	세이프가드
6	러시아	시안화나트륨	7.27	세이프가드
7	미국	H형강	3.28 반덤핑 ‘06.8.18, 상계관세 ‘06.8.14 소급철회	반덤핑/ 상계관세
8	미국	스테인리스 스틸 앵글	6.15 (‘06.5.18 소급 철회)	반덤핑
9	미국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6.19 (조사 종료)	반덤핑
10	브라질	나일론 6번사	6.28	반덤핑
11	아르헨티나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염색직물	6.1	반덤핑
12	인도네시아	담배용ライター	1.19	세이프가드
13	인도네시아	Cast Glass & Rolled Glass	9.20 (조사 종료)	세이프가드
14	중국	골판지	2.13	반덤핑
15	중국	EPDM(이중합성 고무)	2.9 (조사 중지)	반덤핑
16	캐나다	자전거	9.1 (대상서 제외)	세이프가드
17	호주	동관	3.22 (미적용)	반덤핑
18	호주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12.8 (조사 종료)	반덤핑
19	EU	3.5인치 플로피디스크	2.17	반덤핑
20	EU	PET Film	8.24	반덤핑
21	EU	컬러TV 브라운관	11.16 (조사 종료)	반덤핑

나. 국별 수입규제 동향

[남아프리카공화국]

□ 2006년 말 현재 남아공은 4건(조사중 1건 포함)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2), 화학(1), 제지(1) 등이며, 규제형태는 모두 반덤핑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 고
스테인리스 용접관	7306.40	반덤핑	'98.7.31	'99.6.18	반덤핑관세율:47.6% '04.7.16. 관세부과 연장 대상업체:LG금속(무협의), 스미깁부산
연선, 로프, 케이블	7312.10	반덤핑	'00.10	'02.8.28	반덤핑관세율:10.4% '07.8.28 종료 예정 KIS WIRE(무협의), DSR제강
폴리에틸렌 수지용기(PET)	3907.60	반덤핑	'05.4.8	'06.2.19	반덤핑 관세율:19.7% SK케미컬, 고합, 휴비스
백상지	4810.92	반덤핑	'05.8.5	-	'06.2.24 잠정관세율 38.0% 잠정관세 부과 당분간 유예 대상업체:한솔제지, 대한펄프

주 : 2006년 12월 11일 기준

□ 2월 9일, PET 반덤핑 최종관세 부과 판정

- 한국산 PET에 2005년 10월의 잠정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 19.7% 반덤핑 최종 관세를 부과함.
- 관세부과 대상 한국업체는 SK케미컬, 고합, 휴비스 등임. 고합과 휴비스의 경우 외교부 확인 및 관세청 수출통계 분석결과, 對남아공 수출실적이 없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전망

□ 2월 24일, 백상지 반덤핑 잠정관세 판정

- 남아공 국제통상행정위원회(ITAC)는 작년 8월 제소된 백상지에 대한 잠정덤핑 마진율을 38% 발표했으나 잠정관세 부과는 당분간 유예기로 함.

□ 카본블랙, PVC 반덤핑 규제 종료

- 7월 14일, 카본블랙 반덤핑 종료

- 카본블랙(99년 9월 반덤핑 최종판정)은 일몰재심 당시 남아공 업체들로부터 관세부과 연장 요청이 없었으므로 2004년 9월에 관세부과가 종료됐어야 하나 올 7월까지 반덤핑 관세(40%)가 계속 부과되고 있었음.

-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이러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 → 남아공 정부는 한국산 카본블랙에 대해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2004년 9월 10일자로 소급해 종료함.

- 11월 3일, PVC(염화비닐수지) 반덤핑 종료

- 2006년 5월 일몰재심에서 한국산 PVC에 반덤핑조치 종료를 결정함. 2001년 6월부터 부과해오던 반덤핑 관세(42.31%)를 2006년 6월 15일자로 소급해 종료함.

[뉴질랜드]

□ 2006년 말 기준, 1건의 반덤핑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오일필터	8421.2300	반덤핑	'04.7.20	'05.1.14	덤핑관세율 : 정홍필터 12%, 강남필터 54%, 신성산업 15%, 유일에어필터 155%

□ 6월 10일, 냉장고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 2001년 6월 반덤핑관세부과 관정을 받은 한국산 냉장고(HS 841810, 841821)와 세탁기(HS 845011)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종료됨.

[대 만]

□ 2006년 12월 현재 1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시멘트 (Portland cement)	2523.2990 2523.1090	반덤핑	'01.7.25	'02.7.19	반덤핑관세율 : 쌍용 117.40%, 동양 126.81%, 라파즈한라 110.99%, 기타 119.92%

자료 : 대만 재정부 關政司

□ 2006년 수입규제의 신규 제소 및 조치 등 변동내역은 없음.

[러 시 아]

□ 2006년 12월 현재 1건의 세이프가드 수입규제가 이뤄지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파이프 (Big-diameter Pipes)	7304.109002/109009/ 319900/399900/599900, 7305.110001/110002/11 0003/110009/120001/ 120009, 7305.19/31/ 39/90	세이프 가드	'05.2.1	'06.7.27	3년간 8% 관세 부과 2006년 12월 말부터 발효예정

자료 : 러시아 경제 통상 발전부

□ 1월 28일, 전구 세이프가드 종료

- 러시아는 연방법령 제50조를 통해 백열전구(HS Code 8539.2290)에 대해 국별로 3년간 수입쿼터를 정함. 한국은 규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음.
- 전구는 2004년 9월에 조사개시됐으나 2005년 5월 1일자로 소급해 종료함.

□ 7월 27일, NaCN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 2005년 10월 조사개시된 한국·일본산 NaCN 세이프가드는 조사결과, 러시아 국내 생산자들의 판매감소는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무혐의로 기각됨.

[말레이시아]

□ 2006년 말 말레이시아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4건(조사중 1건 포함)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인쇄용지	480100	반덤핑	'03.1.16	'03.9.26	반덤핑관세율 43.24%
무수말레산	291714	반덤핑	'04.6.10	'05.2.4	반덤핑관세율 26.34%
PET	390760	반덤핑	'05.1.27	'05.10.23	반덤핑관세율 17.09%
골심지	480511	반덤핑 조사중	'06.7.27		'06.12.24 예비판정 3.48~16.82%

(주 : 2006년 11월 29일 기준)

□ 7월 27일, 골심지 신규 반덤핑조사 개시

- MPPMA(Malaysia Pulp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 제소로 한국·일본·EU·호주·중국·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산 골심지(Corrugating Medium Paper/HS Code 4805.11) 반덤핑조사 개시
- 12월 24일 예비판정 반덤핑 관세율 3.48~16.82%

[멕시코]

□ 2006년 12월 현재 2건의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5503.2001 /2002/ 2003/ 2099	반덤핑	'92.3.19	'93.8.19	반덤핑관세율 : 삼양사 제조·수출시 3.74% 삼양사 제조·대우 수출시 14.81% 제일합섬 제조·삼성 수출시 4.49% 기타 32% '04.12.10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05.7.12 로우멀티드 규제 해제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	5402.3301	반덤핑	'99.12.22	'06.6.20	반덤핑관세율 16.03%

□ 2006년 중 신규제소 및 조사 개시된 품목은 없음.

[미국]

□ 2006년 말 현재 수입규제 건수는 18건(조사중 1건)임.

○ 품목별로는 철강 12건, 화학 2건, 전기전자 및 섬유 각 1건, 기타 2건

○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12건, 반덤핑/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1건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코일	7219.13/14/ 31/32/33/34/ 35/90, 7220.12 /20/90	반덤핑/ 상계관세	'98.6.30	반덤핑: '99.7.27 상계관세: '99.8.6	'05.7.25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 반덤핑: 포스코 2.49%, 대한금속 58.79%, 대양 5.44% 기타 2.49% -상계관세: INI/BNG 0.54%, 대양금속 0.67%, 대한 4.64%, 기타 0.63%

철강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7209, 7210, 7211, 7212, 7215, 7217(일부)	반덤핑/ 상계관세	'92.7.20	상계관세: '93.8.17 반덤핑: '93.8.19	'05.11. 2차 일몰재심 개시 '06.9.11 연례재심 예비판정 -반덤핑:동부 1.97%, 포스코 0.48%, 유니온 1.69%, 하이스코 0.03% -상계관세:동부 0.39%, 포스코 0.07%
철강후판	7208.40/51/ 52/53/90, 7210.70/90, 7211.13/14/ 90, 7212.40/ 50, 7225.40/ 50/99,7226.91	반덤핑/ 상계관세	'99.3.16	'00.2.10	'05.12.6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반덤핑:동국철강 2.98%, 기타 2.98% -상계관세:동국철강 2.36%, 기타 2.36%, 포스코 미소마진율 0.82%(대상 제외)
금속제 주방용품	7323.93 9604.00	반덤핑/ 상계관세	'86.1.31	'87.1.20	'05.9.27 2차재심 결과 -반덤핑/상계관세 지속 판정 범구 31.23%, 대성 6.11%, 해동 12.14%, 경동 8.36%, 남일금속 0.75%, 기타 8.1% -상계관세율 0.77%
스테인리스 열연 후판코일	7219.1100/ 1200	반덤핑	'98.4.27	'99.5.21	'05.7.18 반덤핑관세 지속판정 포스코(6.08%), 기타(6.08%)
철근	7214.20.10	반덤핑	'00.7.18	'01.9.7	- '01.9.7 원심 판정결과 동국제강/한국철강 22.89%, 한보철강 102.28% - '06.8.1 일몰재심 개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PSF)	5503.2	반덤핑	'99.4.30	'00.5.25	'06.4.3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모든 한국기업 7.9%
스테인리스 봉강	7222.1100/ 2000/3000	반덤핑	'01.2.1	'02.3.7	창원특수강 13.38%, 동방 4.75%, 기타 11.30%
스테인리스 선재	722100.05, 15, 30, 45, 75	반덤핑	'97.8.26	'98.9.15	'04.8.13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포스코, 창원, 동방 1.67%
유정용 강판	730421, 29, 730520, 730620	반덤핑	'94.7.20	'96.6.20	'06.10.6 2차 신속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연합철강 12.17%, 기타 12.17% (현대강판은 제외)

스테인리스강 관 이음쇠	7307.23	반덤핑	'92.6.15	'93.2.23	'05.10.20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아세아벤드 21.2%, 기타 21.2%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7306.40	반덤핑	'91.11.1	'92.12.30	- '06.9.11 2차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세아제강 2.67%, 삼미금속 7.92%, 기타 7%
스탠다드 강관	7306.30	반덤핑	'91.10.4	'92.11.2	- '06.8.8 일몰재심 지속 판정 현대강관 6.86%, 한국종합철관 6.21%, 마산철강 11.63%, 세아제강 4.91%,기타 6.37%
PET 필름	3920.62/63/ 69	반덤핑	'90.4.27	'91.4.15	'05.10.20 2차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지속 판정 SKC Ltd. SKC America 13.92%, 기타 21.50%
PC강선	7312.10.1099	반덤핑	'03.2.27	'04.1.28	고려제강·동일철강 54.19%, 기타 35.64%
DRAM	8542.21.2021	상계관세	'02.11.27	'03.8.11	하이닉스 44.29% '06.11.15 가중평균마진 2.7% '06.11.16 연례재심의 조사기한 연장('07.2.7)
폴리염화비닐 (PVA)	3905.30	반덤핑	'02.9.26	'03.10.1	동양제철화학 38.74%, 기타 32.08%
도공상실지	481013/14/ 19	반덤핑/ 상계관세	'06.11.27		-한국 대상업체:한국제지, 한솔 제지, 흥원제지, 계성제지, 남한 제지, 신호제지, 신무림제지 -'06.12.15 ITC 예비 긍정피해 판정 -DOC, 예비 덤핑판정 결과를 '07.4.9(반덤핑), '07.1.24(상계관 세)경 발표 예정

주 :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11월 27일, 도공상실지 신규 조사 개시 및 잠정 반덤핑 판정

- 미국 NewPage Corporation의 제조로 한국산을 포함한 중국산과 인도네시아산 도공 상실지(Coated free sheet paper)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 한국 피소업체로는 한국제지, 한솔제지, 흥원제지, 계성제지, 남한제지, 신호제지, 신무림제지 등임.

□ 6월 19일,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조사 종료

- USITC, 2005년 6월 21일 개시됐던 다이아몬드 절삭공구(Diamond Sawblade)에 대한 반덤핑조사 산업무피해 판정. 조만간 종료내용 공식적으로 공고 예정

□ 6월 15일, 스테인리스틸 앵글 반덤핑관세 철회

- 스테인리스스틸 앵글(Stainless Steel Angle) 반덤핑 관세가 철회 공고. 2006년 5월 18일부로 소급 적용

□ 3월 28일, H형강 반덤핑관세 철회

- H형강(structural steel beams) 반덤핑/상계관세 철회. 상계관세는 2005년 8월 14일, 반덤핑관세는 2005년 8월 18일부로 소급해 각각 철회됨.

[아르헨티나]

□ 2006년 12월 현재, 3건의 반덤핑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냉연강판	7209.15/16/17/18/ 25/26/27/28/90, 7211.23. 7225.50, 7226.92	반덤핑	'01.7.19	'03.1.10	관세율 60.46% 규제기간:'03.1.11~'08.1.12
아연철판	7219.49, 7210.61, 7212.30/50,7225.92 /99, 7226.94/99	반덤핑	'02.5.30	'03.5.27	관세율 49.67% 규제기간:'03.5.28~'08.5.29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	5407.61/69	반덤핑	'04.2.23	'05.8.22	관세율 U\$7.59/kg(5407.61), U\$6.56/kg(5407.69) ^{주1)} - 가격인상 합의(3년간)

주 : 한국업체 Seo Kwang Trading Co., Ul Hwa Corp., Daedong, Modacrea Inc., Seong An Co., Ltd., Han Kook Synthtics Inc. 등 6개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HS Code 5407.61의 경우 kg당 U\$6.90, 5407.69 경우 kg당 U\$5.96의 최저가격을 적용

□ 6월 1일,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염색직물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 2001년 6월 2일부터 한국산 아세테이트 필라멘트 염색직물(HS 5408.22)에 대해 부과되던 반덤핑관세(kg당 FOB 최저수출가 U\$8.73) 종료

[이집트]

□ 2006년 2건(조사중 1건 포함)의 반덤핑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타이어	4011.10/ 4011.20	반덤핑	'98.9.30	'99.10.10	관세율 5.5~17% 한국타이어 6.5%(픽업용), 금호 무협의, 우성타이어 5.5%(승용차용), 11%(픽업용), 17%(트럭버스) '05.3.17 반덤핑관세 연장 ('09.10.2.까지 조치)
DOP (Diocetyl Phthalte)	291732	반덤핑 조사중	'06.9.12		

□ 9월 12일, 한국산 D.O.P 신규 반덤핑 조사

- Int'l Company for Plastic & Solvent 제소로 한국산 Diocetyl Phthalates(D.O.P/ 오르토프탈산 디옥틸/HS Code 291732)에 대해 신규 반덤핑 조사 개시
- DOP는 전기선, 호스, 신발, 완구 제조용 PVC, 가죽 및 페인트 원료로 널리 사용되는 제품으로 조사대상 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임.
- 최근 3년간 한국의 대이집트 D.O.P 수출실적을 보면 2003년 58만4,850달러(337.0% 증가), 2004년 94만9,119달러(62.3%) 2005년 259만5,373달러(173.5% 증가), 2006년 1~10월 241만9,109달러(38.5%)를 기록함.

[인도]

□ 2006년 12월 현재 총 19건(조사중 3건 포함)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규제형태별로 반덤핑규제 18건, 세이프가드 1건이고, 품목별로는 철강 1건, 화학 12건, 섬유 4건, 기타 2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NBR (Acrylnitrile Butadiene Rubber)	400259	반덤핑	'96.3.15	'97.7.17	관세율:US\$1,692.12~2,314.8/t '05.6.6 중간재심 결과 금호석유화학 13.22%, 기타 48.75%
아크릴 단섬유(ASF)	5501.50 5503.30	반덤핑	'96.9.13	'97.10.24	'02.8.6 일몰재심 결과 \$0.225/kg, 덤핑마진 16.53%
합성고무 (SBR)	400219	반덤핑	'98.4.7	'99.8.24	'04.7.28 일몰재심 최종 판정 관세율 U\$6.89/ton, 덤핑마진 8.55%(현재 1900시리즈 수출물량 없음)
NaCn (Sodium Cyanide)	283711	반덤핑	'99.3.8	'00.6.6	'05.9.27 일몰재심 결과 덤핑부과 지속, 관세율:3.71~38%
EPDM	400270 400290	반덤핑	'99.8.27	'03.12.22	관세율:U\$2,418.5/MT
POY(Partially Oriented Yarn)	540242	반덤핑	'01.8.20	'02.9.12	관세율:U\$0.605/kg
PIB(Poly Iso- Butylen)	390220	반덤핑	'01.9.12	'02.10.31	관세율:US\$ 1,037.77/톤
가성소다	281511 281512	반덤핑	'02.5.14	'03.9.23	관세율:US\$ 295.27/톤
압연롤	845530	반덤핑	'02.8.27	'03.8.14	관세율:US\$ 2,851.91/톤
소듐 아황산염	283110	반덤핑	'02.11.14	'03.12.3	관세율:US\$ 1,034.76/톤
탄산칼륨	283640	반덤핑	'02.12.19	'04.2.20	관세율:US\$ 9.45~123.86/톤
염화메틸	290312	반덤핑	'03.2.17	'04.9.24	관세율:US\$ 34.43~42.42/MT

유연성판재폴리올 (PPG)	390720	반덤핑	'02.5.11	'05.1.24	관세율:US\$ 1,472.77/MT SKC 37.01, 기타 56.87%
프로필렌 글리콜 (PG)	290532	반덤핑	'03.8.20	'04.8.10	관세율:US\$ 1,221.38/MT(29.46%)
폴리에스테르사 (PFY)	540243	반덤핑 조사중	'05.6.27	-	'06.7.3 예비 잠정세율 새한·휴비스·효성 0%, HK 8.6%, 기타 45%
나일론 필라멘트사	540210	반덤핑	'05.7.4	'06.7.3	23.74~51.94/kg '06.3.29 잠정세율 US\$3.82/kg
녹말류	1108, 1903, 3505	세이프 가드	'04.7.8	'05.2.16	Sago, Modified Starches, Starch의 인도내 수입시 향후 3년간 가격기준으로 1차년도 33%, 2차년도 23%, 3차년도 13% 긴급수입관세 부과
PVC	390410	반덤핑 조사중	'06.6.27		
PS Plate	844250	반덤핑 조사중	'06.8.24		

□ PVC /PS Plate 신규 반덤핑조사 개시

○ 6월 27일, PVC 반덤핑조사

- IPCL, Finolex의 제소로 한국·미국·대만·일본·중국·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태국산 PVC(HS 390410)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 착수

○ 8월 24일, PS Plate 반덤핑조사

- M/s Technova Imaging System(P) Ltd. 등 3개사 제소로 중국·불가리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한국산 PS Plate(HS 84405020)에 반덤핑여부 조사

□ 7월 3일, 폴리에스테르사(PFY) 예비 반덤핑관세 결과 발표

○ 새한·휴비스·효성 0%, HK 8.6%, 기타 45% 잠정 반덤핑세율

□ 7월 3일, 나일론 필라멘트사 최종 덤핑관세율 확정

○ 태광 49.9%, 효성 49.49%, 기타 74%. 3월 29일 예비관정시 52~62% 부과

[인도네시아]

- 2006년 12월 현재, 인도네시아는 2건의 반덤핑관세와 1건의 세이프가드 총 3건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진행상황
카본블랙	2803.00	반덤핑	'98.7.1	'04.9.16	관세율 7~10% 재심 진행중
비코팅 인쇄용지	4802.52	반덤핑	'03.2.10	'04.11.11	관세율 : 59.64%
Ceramic Tableware	6911, 6912	세이프가드	'05.5.13	'06.1.4	1차년도 1,600Rp/kg 2차년도 1,400Rp/kg 3차년도 1,200Rp/kg

- Cast Glass & Rolled Glass 세이프가드 신규조사 및 조사종결

- 1월 2일 한국산 Cast Glass & Rolled Glass(HS Code 700312) 세이프가드 혐의 조사개시
- 9월 20일, 최종 판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 사례로 판정되면서 사건이 종결됨. (240/SG-K3/IX/2006)

- 1월 19일, 담배용ライター 반덤핑 조사 종결

- 2005년 7월 조사 개시됐던 한국산 라이터에 대해 최종판결 결과, 시장피해 없음으로 조사 종결(065/SG-K2/I/2006)

- Ceramic Tableware 세이프가드 최종 부과

- 1월 4일, 확정판결이 나면서 총 3차년도까지 적용기준이 확정된 상황임.

[일 본]

- 2006년 12월 현재 반덤핑조치 1건, 상계관세조치 1건 등 총 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PSF)	5503.20	반덤핑	'01.4.23	'02.7.27	덤핑마진 6~13.5% 피소기업 : 삼영합섬, 성림, 대양산업, 휴비스 등
D-RAM	8542212010 8473304060	상계관세	'04.8.3.	'06.1.27	관세율 : 하이닉스 27.2% (2010.12.31.까지)

자료 : 농림수산성, 후생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관련 자료

- 한국산 DRAM 27.2% 상계관세 부과 결정
 - 1월 20일 일본정부는 하이닉스 DRAM에 5년간 27.2%의 상계관세 부과
 - 우리정부는 WTO에 제소. 2006년 6월 WTO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됨.
- 8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관세부과 연장위한 조사 시작
 - 일본 재무성 및 경제산업성은 2006년 6월 帝人화이버 주식회사, 동래주식회사, 유니치가화이버주식회사의 3사로부터 제출된 과세 기간연장신청에 대해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과세기관 연장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한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2002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
- 2006년 11월 24일, 한국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닭고기 및 관련 가공식품 수입금지 조치

[중 국]

□ 2006년 12월 현재 대한 수입규제는 반덤핑 조치 총 21건(조사중 2건 포함)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신문용지	4801.00 4802.61/6910	반덤핑	'97.12.1	'99.6.3	관세율 : 55~78% '04.6.30 반덤핑관세부과 연장
폴리에스테르 필름	3920.6200	반덤핑	'99.4.16	'00.8.25	관세율 : 13~46% '05.12.28 재심결과 부과기간 5년 연장 효성 26%, SKC 13%, 도레이 새한 33%, 기타 46%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7219.31/32/ 33/34/35/90, 7220.20	반덤핑	'02.3.23	'06.4.8	부과기간 연장 관세율 : 포스코 0%, 유니온 3%, HYSCO 12%, 동부 14%, 기타 57%
이염화메탄	2903.1200	반덤핑	'00.12.20	'02.6.20	관세율 : 4~66% 삼성정밀 4%, 기타 28%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5503.2000 5506.2000	반덤핑	'01.8.3	'03.2.3	관세율 : 2~48% 새한,성립 2%, 휴비스 3%, 삼흥 5%, 대한화섬 33%, 기타 48%
PET 칩	3907.6011 3907.6019	반덤핑	'01.8.3	'05.4.25	'03.4 확정관세(5~52%) '05.4 재심판정(효성 26%)
아크릴산 에스테르	2916.1200	반덤핑	'01.10.10	'03.4.10	관세율 : 2~49%
아트지 (동판지)	4810.13/ 14/19	반덤핑	'02.2.6	'03.8.6	관세율 : 4~51%
무수프탈산 (PA)	2917.3500	반덤핑	'02.3.6	'03.8.31	애경유화 0%, 동양제철화학· 고합화학 4%, 기타 13%
합성고무 (SBR)	4002.19.11/ 12/19	반덤핑	'02.3.19	'03.9.9	관세율 : 7~27% '05.12.13 재심결과 LG대산유화 4.5%
PVC	3904.10.00	반덤핑	'02.3.29	'03.9.29	관세율 : 6~76%
TDI	2929.10.10	반덤핑	'02.5.21	'03.11.22	관세율:3~49% '06.1.10 재심결과 4.05~61.4%

페놀	2907.11.10	반덤핑	'02.8.1	'04.2.1	관세율 : 5~16% 금호p&b 5%, 기타 16%, LG석유화학 0%('06.9.5)
클로로포름	2903.13.00	반덤핑	'03.5.30	'04.11.30	관세율 : 32~96%
광섬유	9001.10.00	반덤핑	'03.7.1	'05.1.1	관세율 : 7~46%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2825.10.10	반덤핑	'03.12.17	'05.6.17	관세율 : 28~184%
핵산	2934.99.90 3824.90.90	반덤핑	'04.11.12	'06.5.12	대상 25%, 기타 119%
ECH Epichlorohydrin	2910.30.00	반덤핑	'04.12.28	'06.6.28	관세율 :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4.0% 기타 한국기업 71.5%
폴리우레탄	5402.49.20 5402.69.20	반덤핑	'05.4.13	'06.10.13	효성 0%, 동국무역 2.86%, 태광산업 2.31%, 기타 한국기업 61.00%
옥탄올	2905.16.00	반덤핑 조사중	'05.9.15	-	'06.9.15. 조사기간 6개월 연장 발표
비스페놀A (PBA)	2907.23.00	반덤핑 조사중	'06.8.30	-	

자료 : 중국 상무부(www.mofcom.gov.cn) 공평무역국

□ 8월 30일, 비스페놀 A 반덤핑 조사 개시

- 중국 藍星化工新材料有限公司 등의 제조로 일본·한국·싱가포르·대만산 비스페놀 A(HS 2907.2300) 반덤핑 조사 개시
- 반덤핑조사는 2005.4.1~2006.3.31 기간을 대상으로, 산업피해조사는 2003.1.1~2006.3.31을 대상으로, 2006년 8월 30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실시함.

□ 2월 9일, EPDM 반덤핑 조사 중지

- 2004년 8월 개시됐던 한국산 EPDM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제조업체인 중국 기업(吉林化學工業有限公司) 조사요청 취소(2006.1.23)로 조사 중지됨.

□ 최종 확정관세 부과

- 5월 12일, 핵산(2934.9990, 3824.9090)
- 대상 25%, 기타 한국기업 119%, 일본 기업 119%

- 6월 28일, ECH(2910.3000)
 - 삼성정밀화학 3.8%, 한화석유화학 4.0%, 기타 한국기업 71.5%
- 10월 13일, 폴리우레탄(5402.4920, 5402.6920)
 - 효성 0%, 동국무역 2.86%, 태광산업 2.31%, 기타 한국기업 61.00%, 일본(12.87%, 61.00%), 싱가포르(10.86%, 기타 61.00%), 대만(5.19%, 61.00%), 미국(61.00%)
 - 중국 山東烟台氨綸有限公司 등 제조로 '05년 4월 조사개시함.

□ 9월 15일, 옥탄올 조사기간 '07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

□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2006.4.8일부터 5년 연장

[캐나다]

□ 2006년 12월 현재, 3개 철강제품에 반덤핑 규제(1개 조사중)를 하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구조용 강관	7306.3010/3090/5000/6090/6099	반덤핑	'03.3.21	'03.11.17	반덤핑관세 89%
스테인리스 강선	7223.0011/19/20	반덤핑	'03.11.21	'04.7.30	관세율 : 181% 정상가격 미제출
동제 관연결구	741210, 741220	반덤핑 조사중	'06.6.8	'06.11.3 예비판정	103%(정상가격 제출시), 188%(미제출업체)

자료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2006.11.29자

□ 동제 관연결구류 신규 조사 착수 및 예비판정

- 캐나다 관세청(CBSA)은 지난 6월 8일 Cello Product Inc.의 제조로 한국·미국·중국산 동제의 관연결구류(HS Code 7412)에 대해 덤핑여부 조사개시
- 11월 3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한국산 동제 관연결구류에 103~188%의 예비 잠정 덤핑관세를 부과 결정

[태 국]

- 2006년 12월 7일 현재 2건의 반덤핑 규제조치가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열연강판	7208, 7211.13/14/19	반덤핑	'02.7.22	'03.5.27	'04.9.20 반덤핑관세 재부과 13.96%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7219.32/33/34 /35,7220.20	반덤핑	'02.2.22.	'03.3.13	50.99%(CIF)

- 2006년 수입규제 변동내역 없음.

[터 키]

- 2006년 12월 현재, 터키의 반덤핑 조치건수는 6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43	반덤핑	'98.1.27	'99.11.30	- 관세율:5.2~10.9% - '04.11 만료후 재조사 - '06.5.18 반덤핑관세 재부과 한국합섬 5.7%, 효성 5.2%, 동국무역 5.5%, 휴비스 5.5%, 도레이새한 5.5%, 기타 10.9%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5503.20	반덤핑	'99.3.4	'00.3.13	선경 11.9%, 삼양사.고합24.6% - '06.9 일몰재심 최종판정 지속(모든 업체 10%)
폴리에스테르 직조섬유사	5402.33	반덤핑	'99.3.4	'00.6.28	관세율:33.7%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직물	5407 일부	반덤핑	'99.11.1	'02.2.13	창운 4.96%, 성안 7.07%, 위드 3.51%, 해동 38.61%, 평균마진 14.64%, 최고마진 40.0%
금속드리사	5605	반덤핑	'04.2.7	'04.9.24	관세율 U\$2.2/kg
PET	3907.6020	반덤핑	'04.12.9	'06.1.27	관세율 6.5%

□ 1월 27일, PET 최종 확정관세 부과

- 2004년 12월 조사개시된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6.5%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업체는 동국무역과 SK Keris임.

□ 6월 24일, 폴리에스테르 직조섬유사(HS 5402.33) 반덤핑 재조사

□ 6월 2일,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직물(HS 5407) 우회수출 조사

[파키스탄]

□ 2006년 12월 현재, 파키스탄의 반덤핑 조치건수는 3건(조사중 1건 포함)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PVC Resin	3904.10	반덤핑	'04.6.26	'05.2.24	관세율 40.18% 피소업체 : LG Int'l Corp., LG Chem, Ltd.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5402.33 5402.43	반덤핑	'05.5.12	'06.3.17	효성 29.07%, 동국 6.92%
폴리에스테르 원면(PSF)	550320	반덤핑 조사중	'06.8.9		

□ 8월 9일, 폴리에스테르 원면 신규 반덤핑조사 개시

- Dewan Salman Fibers Ltd., Ibrahim Fibers Ltd., ICI Pakistan Ltd. 등의 제소로 PSF(HS 550320)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 예비판정 예정일은 2007년 2월 9일이며, 인도네시아·태국산도 함께 피소됨.

□ 3월, Polyester Filament Yarn(PFY)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 작년 5월 조사 개시된 PFY(HS 5402)에 효성 29.07%, 동국 6.92%에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호 주]

□ 2006년 12월 말 현재 수입규제 대상건수는 총 9건임.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백판지	4810.1390/1356/ 1990/1957/2990/ 2964/9900/9985	반덤핑	'04.12.15	'05.7.28	관세율: 31.7% '05.7.27 가격인상 약속 발효
철/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08.52.00/41	반덤핑	'03.8.20	'04.4.2	동국제강 0.4%(이후 미소마진 판정), 포스코, 기타 10.6%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3901.20.00/03	반덤핑	'02.10.11	'03.12.18	대림산업 무혐의, 기타업체 적용
초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3901.1000/1001/ 9000/9006	반덤핑	'02.10.11	'03.12.3	'05.9.23, 연례 재심결과 현대 무혐의, 기타업체 적용. 내용 대외비
폴리올(PPG)	3907.20.00/36	반덤핑	'01.4.26	'02.4.27	관세율 8~15%(323\$/MT)
발포성 폴리 스틸렌(EPS)	3903.11/12	반덤핑	'92.2.19	'92.11.4	관세율:0.5~30% '02.9 관세부과 재연장
PVC	3904.10.00/18	반덤핑	'99.4.1	'00.3.24	관세율:9~34% (36.9~75\$/MT) '05.11.9 재심 결과 관세부과 5년 연장
열연형강	7216.3100/3130/ 3200/3231/3300/ 3332/4000/4033	반덤핑	'01.4	'02.7.6	INI스틸 18.2%
세탁기	8450.1100/1140/ 1103/1104/2000/	반덤핑	'02.7.15	'03.9.18	관세율:8% LG전자 무혐의

□ 구조물용 철강파이프 신규 반덤핑 조사 및 조사 종료

- 6월 8일, 한국·말레이시아·대만·태국산 구조물용 철강파이프(HSS; 7306.30/60)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 이 품목은 2005년 반덤핑조사 종결조치가 최종인정(2005.10.21)됐으나 호주업체의 조사요청이 있어 2005년을 대상으로 재조사 개시

○ 12월 8일 호주 관세청 최종적으로 반덤핑협약에 대해 무혐의 판정

□ 3월 22일, 동관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E U]

□ 2006년 12월 현재, EU는 총 6건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음.

< 對韓 수입규제 현황 >

품목	CN 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PET 칩	3907.6020 ex 3907.6080	반덤핑	'05.12.1	'04.11.26	중간재심 결과, 대한화섬·KP케미컬·SK케미컬 무혐의, 호남석유화학 101.4Euro/t, 동국무역·기타 148.3Euro/t
철강제 관련결구류	ex 7307.9311/ 9319/9930/9990	반덤핑	'01.6.1	'02.8.24	44% 2007년 8월 종료예정
컬러TV	ex 8528.1252/ 1254/1256/1258 /1262/1266	반덤핑	'92.11.25	'02.8.30	관세율 : 15.1% 2007년 8월 종료예정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5503.20	반덤핑	'99.10.7	'05.3.17	중간재심 결과,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이스트영·에스탈·금풍·건백·삼흥 6%, 기타 10.6% 2010년 3월 종료예정
양문형 냉장고	8418.1091	반덤핑	'05.6.2	'06.9.1	삼성 0%, 대우 3.4%, LG 12.2%, 기타 12.2%
D-RAM	8542.2111/2113/ 2117/2101/2105, 8548.9010	상계관세	'02.7.25	'03.8.22	관세율 34.8% '06.4.11 32.9%로 하향조정

□ 컬러TV 브라운관 신규 반덤핑조사 및 조사종료

- 1월 11일 EU집행위는 TUBE의 제소로 한국·중국·말레이시아·태국산 컬러 TV 브라운관(CPT)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 11월 16일 덤핑과 관련산업 피해 인과관계 입증 불충분으로 조사 종결

□ 9월 1일, 양문형 냉장고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 대우 3.4%, LG 12.2%, 삼성 0%, 3도어 제외
- 유럽 Whirlpool사 제소로 2005년 6월 조사 개시돼 3월 2일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됨. 대우 9.1%, LG 14.3%, 삼성 4.4%

□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 8월 24일, PET필름 반덤핑규제 종료
 - 2000년 5월 조사개시돼 2001년 8월 7.5~13.4%의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받아왔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반덤핑조치 종료
- 2월 17일, 3.5인치 플로피디스크 반덤핑규제 종료
 - 1992년 조사개시돼 1994년 8.1%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던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반덤핑조치 종료

□ 4월 20일, 중국산 실리콘메탈 우회덤핑방지 조사 개시

- 중국산 실리콘(HS 28046900)의 우리나라를 통한 우회수출 조사
 - EU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 목적으로 원산지를 허위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방지조사(anti-circumvention)를 강화하는 추세
 - 주요 조사대상 국가는 중국으로 실리콘과 쿠마린제품 조사개시

3. 2007년 국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가. 총괄

□ 세계적인 자유무역 확산 추세

- 2006년 9월 기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21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됐고, 이 중 133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⁷⁾
- 대표적 對韓 수입규제국가들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여 자유무역정책 기조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조치 도입은 감소될 전망이다.

□ 중국산 동반규제 주의

- 한국산 상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으나, 일부 국가에서 국내산업의 요구나 실업감소 등의 정책목적을 위해 신규조치 도입 가능
- 각국의 수입규제조치 도입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대체로 중국산 저가수입품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압력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전망
- 그러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경계강화로 우리상품에 대한 동반규제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보호무역주의 상존

-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미국은 민주당 집권 이후 교역관련 법안처리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고 EU도 무역에 노동과 환경을 연계한 신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출급증 품목과 관련 수출국 주력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물량조절 등으로 수입규제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함.

⁷⁾ 자료 :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in Force, 15 September 2006

나. 국별 對韓 수입규제 전망

[남아프리카공화국]

□ 수입규제 조치 감소,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 올해 들어 남아공의 반덤핑 제소건수는 2005년에 비해 대폭 감소함으로써 수입 규제 측면에서의 통상환경은 크게 개선됨.

※ 남아공의 반덤핑 신규제소 건수 : 23건(2005년) → 2건(2006년 상반기)

- 高유가, 상품수입 증가에 따라 최근 남아공 경상수지 적자폭이 GDP의 6.1%까지 확대되면서 24년만의 최고치를 기록. 경상수지 적자폭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 될 전망

□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

- 남아공 정부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탈피, 개방화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 이에 따라 1998년도에 22%에 달하던 평균 관세율을 현재의 11%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복잡한 관세구조도 단순화시키고 있음.
- 다만, 섬유산업 전통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고 관세율 중 종량세의 비중이 25%에 달해 관세구조가 투명하지 못한 것은 문제점
-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
- 남아공 정부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다자간 무역체제의 보완수단으로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을 적극 추진. 현재 남아공은 EU, EFTA, SACU 등과 FTA 협정을 체결했으며, 미국, 중국, 인도, MERCOSUR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적극 추진

□ 석유화학제품 수출급증

○ 섬유제품

- 2007년부터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쿼터제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남아공 섬유바이어들이 한국으로 거래선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남아공 섬유제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남아공은 섬유산업 보호에 적극적이어서 우리나라 섬유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 높음.

○ 석유화학제품

- 최근 들어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對남아공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2006년 10월 현재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103.4%를 기록
- 남아공의 경우, 석유화학산업이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매우 높고 관련 업체도 많아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이 내년에도 계속 급증할 경우 수입규제 조치가 발동될 가능성 높음.

[뉴질랜드]

□ 2000년부터 시작된 경기 호황이 끝나고 소비, 투자 둔화 및 경상수지 적자가 높은 수준을 보이며 성장률 1~2%대의 Soft-landing의 하강 국면에 진입함.

○ 현재의 경제성장 둔화는 경기순환적인 요인이 크며, 2007년 2%에서 2008년에 3%대로 회복 전망

- 도하라운드 중단 이후 FTA 추진에 관심이 높아지고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과 FTA 협상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음.

□ 자유무역 확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공산품의 수입이 불가피한 대신에 자국의 경쟁력있는 농산물 및 낙농제품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꾸준한 관세인하 확대로 총수입액의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
- 2003년 9월 정책 예고를 통해 의류, 신발, 카펫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5~17%의 수입관세를 2006년 7월부터 점차 인하하고 있으며 APEC에 논의에 따라 2010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할 가능성이 높음.
- 5~17%의 현행 관세율을 2009년 7월까지 5~10%로 인하할 계획임.

□ 신규 수입규제 가능성 없음.

-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은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으로 뉴질랜드의 국내 산업과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적어 우리 상품에 신규 수입규제 가능성은 없음.

[대 만]

□ 저가 중국제품 주시

- 2005년 우리나라의 對대만 수출은 109억 달러, 수입은 8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약 29억 달러였으며, 2006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對대만 수출은 105억 달러, 수입은 78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약 27억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자유무역주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나 저렴한 중국제품의 대량 유입은 대만 자국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신규 수입규제 가능성 없음.

- 대만은 자국의 제품 및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신규 제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산 제품의 유입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중국산 제품의 제3국을 통한 유입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한국제품 수출 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러시아]

□ 경제성장세 지속, 수입시장 규모 확대

- 최근 러시아 경제는 8년 연속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외환보유고도 세계 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가강세로 상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수입증가에 대해 관대한 상황임.
- 석유, 가스 등 자원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커 자국 제조업분야의 육성을 위해서 생산설비를 비롯해 각종 장비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역분쟁 발생소지가 높은 나라는 산업구조가 유사한 구소련국가들, 중국, 동유럽 소재 국가임.
- 러시아의 2007년도 통상정책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WTO 가입 여부임. 미국의회 승인, 그루지아 등과의 양자협상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WTO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가전 등의 수입관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고, 금융업 진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우리 업체의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

□ 2006년 우리나라 최초 무역적자

- 양국간의 무역수지는 우리나라가 1998년 이후 7년간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 2006년 10월 현재 약 5억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최초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고탄소 망간강, 냉열강판, 백설탕, 유리섬유망 추가규제 우려

- 2007년 수입규제 예상품목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고탄소 망간강, 냉열강판, 백설탕, 유리섬유망 등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추가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신규 규제 논의품목으로는 통조림(어류)이 고려됨. 2006년 5월 북서러시아어류가공협회에서는 러시아 경제통상발전부에 수입산 통조림(어류)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 실시를 요청했음. 현재 경제통상개발부가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알려졌음.

[말레이시아]

□ 상호보완 교역구조로 통상마찰 가능성 낮음.

- 2006년 3/4분기까지 6.0%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견실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도 국가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거대 프로젝트 추진 및 물가, 이자율 안정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안정적 성장이 예상됨.
-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나 저변 연관산업의 미발달로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자재, 부품 등을 수입해 중간재 가공 후 완제품 수출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무역제재가 미미한 편임.
- 우리나라와는 원유, LNG 등의 수출 및 전자부품, 철강 등의 수입으로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통상마찰 가능성이 낮은 편. 말레이시아의 연간 반덤핑이나 보조금 조사건수는 평균 1~2건에 머물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06년 1~10월 수출액은 41억2,300만 달러, 수입은 59억1,100만 달러로 17억8,800만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

□ 수입규제 주목 품목 없음.

- 급격한 수출증가율을 보이는 선박해양구조물은 특성상 대금결제시 실적이 집중되므로 큰 의미는 없음. 자동차,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주력 수출 품목이 부진을 보이고 있고 집적회로 반도체, 모니터는 무관세이며, 철강은 50%의 고관세 보호품목이므로 덤핑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임.

[멕시코]

□ 개방적 통상정책

- 멕시코 현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대외무역 시장개방으로 요약됨.

- 현재 멕시코는 43개국과 12개 FTA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또한 2006년 평균관세를 11.94%에서 9.77%로 인하하는 등 수입장벽을 낮추고 있음.

○ 12월 대선을 통해 집권당인 국민행동당(PAN)이 선출됨에 따라 개방적 통상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석유화학제품, 섬유, 안정기 등 제조 우려

○ 최근 멕시코의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호소하고 있음. 한국산 품목의 수출증가시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음.

○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신발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관련업계에서는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여파로 한국산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있음.

○ 멕시코 정부는 현재 중국산 안정기(HS 8501, 8548)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임. 전기제조업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산 안정기에 대한 제조 가능성도 존재

[미 국]

□ 보호무역주의 대두

○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 의회장악 후 최근 교역관련 법안처리- 베트남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⁸⁾ 지위부여 법안이 하원서 부결된 후 재투표로 상하원 통과, 페루 및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지연- 과정서 보호무역주의 우려

○ 미 무역대표부(USTR)은 2006년 11월 16일, WTO 상소기구에서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된 제로잉(zeroing) 관행을 미 상무부(DOC)가 변경코자 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의회에 제출

8)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NTR)란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무역관계인 '정상무역관계(NTR)'를 영구적으로 맺는 것임. NTR 지위 획득시 최혜국(MFN) 대우 혜택을 받게됨.

- 메모를 통해 USTR은 최초로 제로잉 관행이 미국 국내법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이의 한 해석으로 간주한다고 밝힘.
- DOC의 제로잉 관행 변경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개시될 원심에 대해 덤핑마진 산정시 A-A⁹⁾를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만 제로잉 관행을 중단하고, T-T¹⁰⁾나 A-T¹¹⁾를 사용하는 행정재심이나 일몰재심시에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USTR의 메모에 대해 일단의 상원의원들은 USTR과 DOC를 대상으로 서한 발송(2006.12.11)을 통해 제로잉 관행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를 통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로잉 관행 변경에 대해 강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 수입규제 조사개시 감소세

- 2004년 이후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감소세(2004년 조사개시 건수 11건, 2006년 4건), 반면 지적권 침해에 대한 미국기업의 제소건수는 급증. USITC를 통해 미국기업의 지적권이 침해됐다고 판정시 수입배제, 판매금지 등으로 결국 해당제품의 미국 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철강업계 시황호전으로 제소가 줄어들어 2004년 이후에는 화학제품에 대한 조사개시 건수(8건)가 전체의 25%를 차지
- 국가별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소가 주를 이룸.
- 2006년 1~9월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동기대비 13.61% 증가한 1,660억 달러를 기록(총 무역수지 적자의 약 27%를 차지)

□ 수입규제 예상품목 : 섬유 및 의류 품목

- 한국산 섬유·의류품목 중 수출증가율 10% 이상 품목들은 물량조절 필요함.

⁹⁾ A-A(average to average; 수출가격 가중평균과 내수가격 가중평균 비교)

¹⁰⁾ T-T(transaction to transaction; 개별 수출가격과 내수가격 간 비교)

¹¹⁾ A-T(average to transaction; 가중평균 내수가격과 개별 수출가격 비교)

- 미-중 섬유협정 결과, 중국제품에 쿼터가 부과된 기능성 패브릭 등 4개 품목(미 중 섬유협정 적용여부에 "○"표시)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함.
- 저가 중국산 수입산을 중심으로 쿼터배정 품목이 선정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산 다음 타깃이 한국산이 되지 않도록 수출물량 조절 필요

< 대미 수출증가율 10% 이상 섬유·의류 >

(단위 : 백만달러)

카테고리	품목군명	2004년 수출액	2005년 수출액	2006.1~9		美中섬유 협정 적용
				수출액	증감률(%)	
cottotn or man-made fiber						
223	non-woven fabrics	14.203	12.988	14.106	47.94	X
226	cheesecloth, batistes, lawns/voile	1.922	1.704	1.933	62.33	X
229	special purpose fabric	103.095	113.859	92.885	10.35	o
239	babies' garm./cloth.access.	25.961	17.848	16.216	25.22	X
cotton						
300	carded cotton yarn	0.111	0.579	0.451	30.57	X
314	cotton poplin/broadcloth fab.	4.62	3.718	3.108	16.03	X
338	m/b knit shirts, cotton	48.344	56.99	47.641	16.08	o
345	cotton sweaters	10.704	7.723	7.277	40.89	X
347	m/b cot. trousers/breeches/shorts	17.057	7.914	7.582	26.66	o
348	w/g cotton trousers/slacks/shorts	39.103	32.51	27.983	23.56	o
350	cotton dressing gowns, robes etc.	1.317	0.502	1.384	323.29	X
351	cotton nightwear/pajamas	7.338	2.395	2.216	23.61	X
wool						
445	m/b sweaters,wool	0.413	0.146	0.516	370.12	X
603	yarn>85% artificial staple fiber	1.562	3.973	2.641	12.71	X
604	yarn>85% synthetic staple fiber	0.351	0.94	0.836	58.46	X
606	non-textured filament yarn	13.333	22.855	22.202	37.84	X
607	other staple fiber yarn	1.218	1.224	2.695	237.77	X
629	other mmf fabrics of stap/fil	3.541	2.346	2.153	20.33	X
631	mmf gloves and mittens	13.977	15.053	16.189	51.95	X
648	w/g mmf slacks/breeches/shorts	51.415	20.847	17.401	26.33	o
665	mmf floor coverings	11.563	15.243	20.097	94.6	X
669	other mmf manufactures	19.692	13.972	20.385	86.72	X
670	mmf flat goods, handbags, lugage	9.402	6.165	6.622	55.3	X
silk and vegetable fiber						
810	woven fab, silk bld/n-cot veg fib	3.072	3.221	3.009	59.85	X
831	gloves/mettens, silk/veg blend	0.135	0.411	0.591	195.93	X
832	hosiery, sil/veg blend	0.014	0.392	0.323	271	X
899	other silk/veg blend manufactures	0.292	0.38	0.736	196.29	X

자료 : OTEXA

[브라질]

□ 룰라 2기 정부가 출범, 수출촉진정책 강화

- 2007년에는 룰라 2기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금리인하, 수출확대,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강화 등에 힘쓸 것으로 전망됨.
- 국내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수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헤알화 강세 현상 지속으로 수출에 불리하고 수입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룰라 2기 정부에서는 환율정책 및 수출촉진정책, 수입증가에 대한 대책 등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998년부터 강화된 수출촉진정책은 룰라 정권에 힘입어 더욱 탄력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룰라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이러한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룰라의 2기 정부 대선공약에 따르면, 고부가가치품목 수출 장려(수출장려 강조), BNDES, Proex, 수출보험 등을 통한 수출장려책 확대, APEX(브라질무역투자진흥기관)의 해외지사 확대, 외국제품의 범람에 대응한 특정분야에 조치를 취할 것 등 수출장려 및 수입증가세에 대한 대책 등이 나와 향후에도 수입증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입규제 조치 증가 가능성 존재
- 대외통상정책은 미국 등 선진국과의 협력보다는 남남협력 및 대 중남미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한국산 타이어, 최저가격제 시행으로 타격

- 한국산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 수출증가율이 100%대를 넘는 수출호조 품목이었으나 올 8~12월까지 브라질 정부의 최저가격제 시행으로 타격을 입었음.
- 현재는 브라질 수입당국이 최저가격제 하향조정으로 문제가 없으나 향후에는 타이어뿐만 아니라, 자국 품목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품목에는 유사 조치 가능성 존재(예: 최근 브라질 정부는 중국산 저가 장난감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사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아르헨티나]

□ 경제성장세 지속

- 2006년도 경제성장률은 8.5%, 2007년도는 7.5%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 한-아르헨티나 교역도 확대추세로 2006년도 우리나라의 대 아르헨티나 수출은 3억5000만 달러, 수입은 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고환율 유지 및 수입대체화정책

- 통상정책의 골자는 △ 수출확대 및 외환가득을 위한 고환율 유지정책(달러당 3.1페소) △ 수입대체화정책 등임.
 - 아르헨티나 정부는 브라질산에 대한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브라질 헤알화 환율변화에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 달러화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인플레이 위험요소보다도 환율방어를 통한 수입확대 제어 및 수출촉진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
 - 자본재, 원부자재 등의 경우는 국내 투자활성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 규제가 심하지 않으나 의류, 완구 등은 수입대체화를 위해 수입규제정책을 실시
-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일부 공산품의 경우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고, 제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자본재 무관세 적용 및 중고기계의 한시적 수입허가 등의 조치가 예상됨.

□ 의류, 가전 수입규제 가능

- 수입대체 공업화를 추진해 정부, 업계와 언론의 관심이 가장 높은 품목은 가전, 완구, 신발, 의류 등임. 완구, 신발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미비해 수입규제 가능성은 낮으나 섬유류(의류 포함), 가전의 경우 수출 급증시 규제 가능성 높음.
- 아르헨티나 정부와 업계는 브라질 및 중국산을 규제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우리나라도 동반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임.

[이집트]

□ 대외무역 개방 확대

- 현 나지프 내각은 무역자유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과도한 수입규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시장개방화 추세를 따라 2004년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를 실시했으며 자국 수출산업화에 필요한 부품, 원자재 수입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관세인하와 세관 통관절차 간소화가 진행될 예정임.
- 또한 FTA의 체결을 통한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확대하기 위해 29개국과 FTA를 체결 혹은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이집트와 우리나라와의 교역수지 적자가 연간 2억 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무역역조에 따른 이집트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하지만, 수출입 품목이 한국은 공산품과 자본재 위주이고, 이집트는 1차 원자재 위주의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고 있어 급격한 수입규제 가능성은 없음.
- 최근 3년간 이집트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를 보면 그 대부분이 반덤핑관세 발동으로 점차 발동건수가 확산되고 있어 중국산이나 인도산 등 저가수출품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반덤핑관세가 발동될 경우, 한국산 제품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저가시장의 진출을 위한 가격상의 무리한 경쟁은 피해야 함.

□ 대한 수입규제 예상품목 : D.O.P(HS 2917.32)

- 이집트의 최대 육성산업인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섬유부분의 경우 이집트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급격한 수입증가가 발생할 경우 조사대상이 될 우려가 있음.
- 2006년 9월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한국산 D.O.P 경우도 이집트 주력 육성산업인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됨. 제조업체가 제시한 덤핑마진이 2%로 미미한 만큼 성실한 조사 대응 및 반박자료를 사전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임.

[인 도]

□ 수입규제 최대 발동국

- 전세계 반덤핑 신규 조사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인도는 무역적자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수입규제를 자국산업 보호의 방편으로 이용, 세계 1위의 수입규제 발동국임.
- 인도는 2006년 기본관세를 2.5% 인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무역국과의 FTA를 체결했으며, 한국과도 협상중임. 2007년에는 ASEAN과 FTA를 체결할 예정임
- 최근의 수입규제 조치는 중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2006년 상반기에 중국산 Steel Wheel, Saccharin 등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바 있음.

□ 대한 수입규제 강화움직임 없음.

-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주요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이나 2006년 들어 석유화학, 섬유부문의 대인도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러한 품목에 새로운 수입규제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철강제품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자동차용 강재나 대형 파이프라인용 제품 등 특수제품이 많아 수입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음.
-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한 품목 중 올 1~6월 실적이 100만달러를 초과하고, 전년 동기대비 수출증가율이 80% 이상 증가한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전년대비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제품이 수입규제를 당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므로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1-6월 對인도 80% 수출증가 품목 >

(단위: 백만달러)

HS코드	품 목	2005 수입액	2006 수입액	증가율 (%)
7208	FL-RL IRON & NA STEEL NUN600MM WD HOT-RL, NOT CLAD	12.1	124.6	926.22
9801	EXPTS OF REPAIRED IMPTS; IMPTS OF RETURNED EXPTS	13.3	52.7	297.59
4801	NEWSPRINT, IN ROLLS OR SHEETS	20.7	48.7	135.93
8529	PARTS FOR TELEVISION, RADIO AND RADAR APPARATUS	15.6	35.1	125
8528	TV RECVRS, INCL VIDEO MONITORS & PROJECTORS	12.0	31.0	159.5
8468	MACHINES, SOLDER ETC; GAS SURF TEMPER MACHINES, PT	0.6	20.4	3117.84
2926	NITRILE-FUNCTION COMPOUNDS	4.7	15.9	236.51
7407	COPPER BARS, RODS AND PROFILES	4.1	13.7	231.43
8504	ELEC TRANS, STATIC CONV & INDUCT, ADP PWR SUPP, PT	4.8	12.6	161.31
8207	INTERCHANGE TOOLS FOR HAND- OR MACHINE-TOOLS, BMPT	4.9	9.9	99.59
8458	LATHES FOR REMOVING METAL, INCL TURNING CENTERS	3.0	7.3	143.76
2907	PHENOLS; PHENOL-ALCOHOLS	2.4	6.7	182.15
3812	PREPARED RUBBER ACCELERATORS; COM PLASTICIZERS ETC	3.4	6.6	95.46
7225	FL-RL ALLOY STEEL NESOI NUN 600MM WIDE	3.1	5.7	80.04
4005	COMPOUNDED RUBBER, UNVULCANISED, PRIMARY FORMS ETC	2.6	5.1	96.33
8704	MOTOR VEHICLES FOR TRANSPORT OF GOODS	0.7	4.5	500.94
6310	USED OR NEW RAGS, SCRAP TWINE ETC OF TEXT MATERIAL	1.9	3.6	87.84
3818	CHEM ELEM DOPED, USED IN ELECTRON, DISCS WAFERS ET	0.5	3.0	529.61
8531	ELECTRIC SOUND OR VISUAL SIGNALING APPARATUS, PTS	0.4	2.9	556.63
8455	METAL-ROLLING MILLS AND ROLLS THEREFOR; PARTS	0.8	2.9	252.08
8424	MECH APPL TO DISPERSE LIQ ETC; SAND ETC BLAST MACH	0.5	2.9	482.71
8506	PRIMARY CELLS & BATTERIES, PARTS	0.5	2.8	432.18
2836	CARBONATES; PEROXOCARBONATES; COMM AMM CARBONATE	1.5	2.8	89.15
8443	PRINT MACH INCL INK-JET MACH ANCIL T PRNT PT NESOI	1.1	2.7	147.38
2837	CYANIDES, CYANIDE OXIDES AND COMPLEX CYANIDES	1.1	2.0	82.67
8209	PLATES, STICKS TIPS ETC F TOOLS UNMNTD OF CERMETS	1.1	2.0	84.16
8445	MACHINES FOR PREPARING TEXTILE FIBERS & YARNS	0.7	1.9	147.76
6309	WORN CLOTHING AND OTHER WORN TEXTILE ARTICLES	0.7	1.8	151.52
3908	POLYAMIDES IN PRIMARY FORMS	0.9	1.7	85.65
8485	MACHINERY PTS, NO ELECT CONNECTORS ETC NESOI	0.4	1.6	273.43
3909	AMINO-RESINS, PHENOLICS & POLYURETHANES, PRIM FORM	0.8	1.5	85.3
7213	BARS & RODS, IRON & NA STEEL, H-R IRREG COILS	0.1	1.3	1817.17
5007	WOVEN FABRICS OF SILK OR SILK WASTE	0.4	1.3	186.23
7409	COPPER PLATES, SHEETS & STRIP, OVER 0.15MM THICK	0.6	1.2	81.47
8474	MACHINERY FOR SORTING SCREENING ETC MINERALS, PTS	0.4	1.2	170
8519	TURNTABLES, RECORD & CASSETTE PLAYERS ETC.	0.3	1.1	323.66
8460	MACHINE TOOLS FOR HONING OR FINISHING METAL ETC.	0.1	1.0	854.69

(자료 : World Trade Atlas)

[인도네시아]

□ 수입규제 담당기관 통합 추진

- 최근 섬유·가전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진출로 자국기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수출입 불균형이 계속되면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는 않음.
- 수입규제 판정을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와 세이프가드위원회(KPPI)가 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수입규제 기준 통일과 효율적인 집행을 모색할 예정임. 양 기관의 통합이 수입규제 강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 섬유, 가전 수입규제 움직임

- 현재 중국 등 경쟁국으로부터 반입되는 경공업제품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압력을 받고 있어 섬유 및 가전분야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자국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철강 등 원자재 가공품, 제지, 농산물 등에 대해 수입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일본]

□ 규제완화정책

- FTA 체결 확대, 각종 경제규제 철폐 및 완화 등의 추세에 맞추어 수입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규제완화를 추진
 - 국민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 및 집행을 강화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됨.
-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에 관한 수입규제가 매우 엄격하므로 지속적으로 주의가 필요함. 농수산물 가운데서도 특히 토마토, 피망 등 긴급감시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중국]

□ 교역증가율 둔화 전망

- 대내적으로 거시경제 조정정책의 지속 추진으로 정책 연속성이 유지되며, 투자 위주 성장에서 소비위주 성장으로의 전환 모색. 대외적으로는 세계 및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주기성 조정국면 진입과 중국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

- 종합적으로 2007년에는 4년 연속 10%대 성장기가 종료되면서 9.5% 성장 전망

- ▶위안화 평가절상 추세 지속 ▶중국 정부의 국제수지 균형 노력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대외수요 약세 ▶WTO 가입 초기의 수출입 급증시기 경과 등의 요인으로 교역증가율 둔화 전망

- 2007년 교역 전망치는 수출 106억달러(10.4% 증가), 수입 94억달러(16.0% 증가)로 수출과 수입증가율이 전년대비 각각 15.6%포인트, 6.7%포인트 하락

- 2007년 총 교역액은 2조 달러로 예상되며, 무역수지 흑자는 2006년(1,500억 달러 전망) 대비 20% 감소한 1,200억 달러로 전망

□ 반덤핑정책 근본적 변화 없음

- 2006년 통상정책은 외국상품의 덤핑으로 인한 자국내 산업피해에 대처하기보다는 해외시장에서의 중국산 제품 반덤핑 피소대응에 더 역점을 둠.

- 2007년 통상정책은 수출 및 무역수지 급속확대에 따른 부작용(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가중, 통상압력 확대, 국내 과잉유동성 등) 방지를 위해 '수입 확대-수출 급증세 조절'에 무게를 둘 듯

- 통상정책 기조의 변화는 외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정책의 강도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반덤핑정책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 내수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재고 누적, 기업마진폭 축소 등의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저가 수입품에 대한 규제는 언제라도 확대될 수 있음.

□ 화공, 철강 등 반덤핑규제 우려 여전

- 2003년 이후 중국의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품목 8개 가운데 6개가 화공제품이며 '07년에도 화공제품에 대한 규제 가능성은 여전
-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유기화학품(92류)은 최근 중국의 수입증가율이 17.7%('05년)에서 3.1%('06년 1~10월)로 뚜렷이 하락해 주의를 요함.
- . 환식탄화수소(2902)의 경우, 중국의 대한 수입비중이 44%이며 중국 전체의 수입증가율은 담보상태이나 대한 수입실적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 비환식탄화수소(2901)는 중국 전체 수입물량 가운데 대한 수입이 약 절반을 차지하며 한국·일본·대만산 수입물량이 중국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3국(지역)은 피규제 가능성이 있음.
- 철강은 냉연·열연강판의 재고 확대 가능성으로 시장불안이 예상돼 관련제품 수출시 주의를 요함.

[캐나다]

□ 중국, 인도, 한국 중심으로 교류 강화

- 캐나다는 북미시장에서의 입지강화 및 중국, 인도, 한국으로 대표되는 '이머징마켓'과의 교류강화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입지 제고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통상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음.
- 한국과의 FTA 체결 및 아시아국과의 교역확대를 통한 동북아 진출 본격화함.

□ 자동차업계, 한국 제재조치 요구

- 한국과 캐나다는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한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기술기반의 2차산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캐나다는 광물, 목재, 농수축산물, 석유화학제품 등의 1차산업 제품들을 위주로 한국으로 수출

- 캐나다자동차산업노조가 자동차부문의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를 주장, 정부에 강경한 조치를 요구함. 자동차 및 관련제품에 대한 제제조치 단행 가능성은 한-캐 FTA가 진행되는 현재로서는 낮지만, 자동차산업은 캐나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한국산의 수입증가에 대한 캐나다 업계의 반응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캐나다화 강세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캐나다 제조업체들의 수출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캐나다 제조업계의 반응에 대한 예의주시 필요

[태 국]

□ 9월 군사쿠데타 태국 경제에 악영향은 미미

- EIU는 2006년 태국 GDP 성장률을 당초 4.2%에서 3.9%로 인하했으며, 2007년 성장률도 당초 4.8에서 4.7%로 인하 발표. 2008년 성장률은 당초 발표와 동일한 4.9%
- '06년 6~8월 고유가, 남부사태로 인한 불안정, 정치불안 등의 영향으로 소비투자심리 위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제안정 부문, 인플레이션 상승률 진정 추세

□ FTA 추진에 적극적

- 2006년 12월 현재 ASEAN 및 태국-호주, 태국-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이외에 인도, 중국, 바레인 등과는 일부 품목에 대한 early harvest 성격의 관세인하를 실시 중에 있기도 함. 일본, 미국, 인도, 바레인, 페루, 파키스탄 등과 FTA 협상은 중단돼 있는 상태이나 내년 연말 이후 재개될 전망
- 태국 정부는 경제적·정치적 목적으로 주요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입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별 반덤핑조치가 부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특별히 수입규제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음.

[터 키]

□ 자국산업보호에 기준 엄격

- 2006년 10월 현재 터키의 수출액은 약 678억달러, 수입 1,123억달러로 44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 현 정권 집권후 교역량은 매년 두자릿 수 이상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증가에 따른 수입량 또한 급증해 만성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한국 또한 터키의 11번째 수입국으로 해마다 수입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터키 정부는 최근 무역불균형 완화를 한국측에 요청한 적이 있음.
- 현 정권은 수출 드라이브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생산기지로서 터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터키산 제품 수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EU와는 관세동맹 체결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EU국가와의 교역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U 가입관련 등 EU와의 경제적 밀접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수출품목 또한 기존의 섬유위주에서 자동차, 가전제품, 섬유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섬유의 경우 내수시장 및 EU시장에서 중국산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터키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련 조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국의 주력품목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임.

□ 섬유 등 터키 주력품목 수출시 주의

- 한국의 경우 중국산과 같은 저가제품의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섬유와 같이 터키의 주력상품과 중복돼 내수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파키스탄]

□ 수입규제 강화보다는 개방

- 현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개방 정책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본 및 기술부족으로 자국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수입규제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음.
- 특히 정부의 산업화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제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혜택부여 등 수입자유화 정책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발효된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및 중국과의 FTA 체결 등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이란 등과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언더밸류 관행 반덤핑 제소 위험

- 그러나 최근 파키스탄의 무역수지 규모가 확대되면서 업종별 단체를 심으로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반덤핑 제소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현지 수입구조상 언더밸류가 관행화되어 있어 반덤핑 제소시 실제 덤핑 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파키스탄 바이어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로 언더밸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정부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와 세관통제 강화를 통해 탈세 및 밀수를 강력하게 재제함에 따라 향후 국내기업의 파키스탄에 수출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
-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추가 수입규제 움직임은 없는 상태임.

□ 섬유, 의약품 규제 우려

- 그러나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섬유, 의약품 등 현지 생산이 비교적 활발하고 관련 협회 등이 조직돼 있는 분야에서 수입규제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호주]

□ 수입규제 전망

- 유리한 세계경제 여건, 국내 경제 지표의 안정세에 힘입어 2007년 호주는 3.5%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호주의 산업구조 및 최근 호주화 강세에 따른 수입구매력 상승에 따른 것으로 무역적자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거의 없는 상황임. 따라서 무역정책의 급변을 가져오거나 수입규제를 강화할 정도의 거시경제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호주는 선진국 중 가장 활발하게 FTA 체결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양자간 협상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 ASEAN, 말레이시아, GCC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일본과의 협상 시작이 예정돼 있음.
- 전반적인 통상정책 기조는 이와같이 FTA를 통해 경쟁력 낮은 공산품 수입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등 강화를 통해 자국상품의 입지를 높이는데 무게를 두고 있음.

□ 특별히 수입규제 우려 품목은 없음.

- 기존 주요 수입규제 대상 품목인 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에 있어 특별히 규제가 우려되는 품목은 없음.
 - 더구나 중국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로 인해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은 다소 낮아진 상태임.
- 전반적으로 호주의 수입규제 수위가 낮아지는 추세이나 제조 자체는 개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함.

[E U]

□ 신보호주의적 정책 강화

- EU 통상정책, 규정 및 절차는 기본적으로 WTO 협정과 맥락을 같이함.
- 2006년 10월 EU 집행위는 새로운 통상정책인 '글로벌 유럽'을 발표하고, 새롭게 전개돼 가는 글로벌 세계경제체제 하에서 유럽의 성장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과 '경쟁'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
- 2006년 12월 EU 집행위는 이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통상규제수단을 국제화시대에 부응해 유럽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할 계획임을 표명
 - 특히, 현재 평균 5년인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을 단축하고 대상 축소도 검토
- 이와 같이 최근 EU 통상정책의 방향이 보호주의적 규제수단의 사용을 억제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과 '노동' 및 '환경' 을 연계하는 신보호주의적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평판디스플레이 수입규제 우려

- 업계를 통해 파악되는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 추가적용 예상품목은 없으나, 최근 대EU 수출이 급증한 평판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해 역내기업의 반덤핑조사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이 품목은 지난 2005년 대 EU 수출액 13억7,2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 201.6%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의 대EU 수출품목 중 6위 차지했음. 금년에도 EU 수출은 10월까지 26억8,6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176.1% 급증했으며, 전체 수출품목 중 4위 기록

첨부

< 국별 수입규제 현황 >

(2006.12.26 현재)

국 가	반덤핑	상계관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합 계
남아공	4(1)	0	0	0	4(1)
뉴질랜드	1	0	0	0	1
대만	1	0	0	0	1
러시아	0	0	0	1	1
말레이시아	4(1)	0	0	0	4(1)
멕시코	2	0	0	0	2
미국	12	1	5(1)	0	18(1)
아르헨티나	3	0	0	0	3
이집트	2(1)	0	0	0	2(1)
인도	18(3)	0	0	1	19(3)
인도네시아	2	0	0	1	3
일본	1	1	0	0	2
중국	21(2)	0	0	0	21(2)
캐나다	3(1)	0	0	0	3(1)
태국	2	0	0	0	2
터키	6	0	0	0	6
파키스탄	3(1)	0	0	0	3(1)
호주	9	0	0	0	9
EU	5	1	0	0	6
합 계	99(10)	3	5(1)	3	110(11)

주 : ()안은 현재 조사중인 건수

<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

(2006.12.26. 현재)

국 가	철 강	전기전자	화 학	섬 유	기 타	합 계
남아공	2	0	1	0	1(1)	4(1)
뉴질랜드	0	0	0	0	1	1
대만	0	0	0	0	1	1
러시아	1	0	0	0	0	1
말레이시아	0	0	2	0	2(1)	4(1)
멕시코	0	0	0	2	0	2
미국	12	1	2	1	2(1)	18(1)
아르헨티나	2	0	0	1	0	3
이집트	0	0	1(1)	0	1	2(1)
인도	2(1)	0	12(1)	4(1)	1	19(3)
인도네시아	0	0	1	0	2	3
일본	0	1	0	1	0	2
중국	1	0	15(2)	2	3	21(2)
캐나다	3(1)	0	0	0	0	3(1)
태국	2	0	0	0	0	2
터키	0	0	1	5	0	6
파키스탄	0	0	1	2(1)	0	3(1)
호주	2	1	5	0	1	9
EU	1	3	1	1	0	6
합계	28(2)	6	42(4)	19(2)	15(3)	110(11)

주 : ()안은 현재 조사중인 건수

2006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기획조사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2006.1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2006.1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06-004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1
06-005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6.2
06-006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2006.2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2
06-008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06.2
06-009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6.2
06-010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3
06-011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2006.3
06-012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2006.3
06-013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2006.3
06-014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6.4
06-015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2006.4
06-016	2006. 2/4분기 수출전망 및 대한수입규제 현황	2006.4
06-017	주요 분야별 대미 FTA체결국의 대응현황	2006.4
06-018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2006.4
06-019	섬유교역자유화 1년을 평가한다: 서남아시아 섬유산업 동향 및 영향	2006.4
06-020	일본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시사점	2006.4
06-021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2006.4
06-022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변화와 기회	2006.4
06-02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2006.5
06-024	장강삼각주 IT산업 성장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6.5
06-025	한중일 산업협력, 그 첩경	2006.5
06-026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2006.5
06-027	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2006.5

06-028	해외진출 한국기업 원고 대응동향 및 경쟁국 대응사례	2006.5
06-029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2006.5
06-030	한-아제르바이잔 및 한-UAE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확대방안	2006.6
06-031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2006.6
06-032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1) : 북미편	2006.6
06-033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2006.6
06-034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2006.6
06-03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2) : 구주편	2006.6
06-036	환율파동에 따른 한일수출경쟁력 비교	2006.6
06-037	200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6.6
06-038	2006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6.6
06-039	중국 내수시장 공략,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라	2006.7
06-040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 및 피해사례 조사	2006.7
06-041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2006.7
06-042	아랍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대응책	2006.7
06-043	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2006.8
06-044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주요쟁점과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2006.8
06-045	06 중국투자기업 그랜드 서베이	2006.8
06-046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3) : 아시아편	2006.8
06-047	아프리카 7개국 진출 유망분야	2006.9
06-048	금년 대중수출 둔화 원인 분석 및 전망	2006.9
06-049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9
06-050	일본 e-비즈니스 시장, TechNiCs로 승부하라	2006.9
06-051	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장벽 (TBT) 동향과 피해사례	2006.9
06-052	FAQ로 알아보는 China RoHS	2006.9
06-053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4가지 대응 포인트	2006.9
06-054	해외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4)-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UAE	2006.9
06-055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북미편	2006.9
06-056	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10
06-057	한-리비아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6.10
06-058	FTA 통한 분야별 해외기업 성과 제고사례 분석 - 미국과 FTA 체결국 기업을 중심으로 -	2006.10

06-059	부품소재 대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 251개 일본 수입상 모니터링 조사 -	2006.10
06-060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구주편	2006.10
06-061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및 시장진출 확대 방안	2006.10
06-062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유럽편	2006.11
06-063	2006 세계의 틈새시장 틈새품목	2006.11
06-064	EU 환경규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06.11
06-065	중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	2006.11
06-066	Q&A로 살펴보는 EU 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2006.11
06-067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러시아 및 동부유럽편	2006.11
06-068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아시아편	2006.11
06-069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중남미편	2006.11
06-070	브라질투자기업 경영실태분석 보고서	2006.11
06-071	원, 엔 환율 탈동조화와 우리 수출	2006.12
06-072	韓-GCC(걸프협력회의) FTA 체결 영향과 시사점	2006.12
06-073	중동아프리카 지역 한,중,일 수출경쟁력 조사 및 시사점	2006.12
06-074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아시아편	2006.12
06-075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중남미편	2006.12
06-076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7년 수출전망	2006.12
06-077	최근 북중관계 조망 - 경제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대북위협론 해부	2006.12
06-078	중국의 對美 수출증가율 둔화와 시사점	2006.12
06-080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북미편'	2006.12

□ 무공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6.1
06-002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6.1
06-003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2006.1
06-004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2006.1
06-005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6.2
06-006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 한류, 유행에서 산업으로 -	2006.2
06-007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 러시아 . 캐나다 편	2006.3

06-008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I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호주 편	2006.3
06-009	IK Annual Report 2005-외국인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6.3
06-010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6.6
06-011	유럽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6.6
06-012	러시아 SEZ 진출 가이드	2006.6
06-013	2006 서울국제식품전 결과보고서	2006.6
06-014	5년을 앞서가는 중국 비즈니스 전략	2006.6
06-015	현장에서 읽는 중국 환경시장 : 중부 6개성을 가다	2006.6
06-01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7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6.7
06-019	2006 해외투자백서	2006.7
06-020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	2006.7
06-021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투자 포커스	2006.7
06-022	중동아프리카지역 산유국의 주요 플랜트 개발정책 및 참여유망 프로젝트	2006.9
06-023	중동아프리카지역 발주기관/에이전트/EPC업체 디렉터리	2006.9
06-024	독일 자동차 부품 OEM 납품 가이드	2006.9
06-025	KOTRA 해외마케팅사업 성공사례	2006.10
06-026	우리 기업의 국제협상.계약 실패사례	2006.10
06-027	베트남 투자법령집	2006.10
06-028	중국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2006.10
06-029	한 미 FTA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략	2006.11
06-030	러시아 비즈니스 로드맵 (개정판)	2006.11
06-031	중국투자실무가이드(개정판)	2006.11
06-032	일본 유통업체가 뽑은 수입선호 품목 30선	2006.12
06-033	인도 비즈니스 로드맵(개정판)	2006.12
06-034	한류국가 문화산업의 이해	2006.12
06-035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2006.12
06-036	한중일 3국 기업간 성공적인 제휴의 조건	2006.12
06-037	러시아 IT시장 클릭하기	2006.12
06-038	「상업기업」을 통한 중국 내수판매전략	2006.12

□ 산업페이지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주요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4
06-002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3	주요국의 자동차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6.6
06-004	Global Medical Map (의약품편)	2006.6
06-005	Global Medical Map (의료기기편)	2006.6
06-006	주요국 IT 유망분야 및 진출방안	2006.6
06-007	주요국의 신발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8	주요국의 산업용 섬유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6
06-009	주요국의 기계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2006.6
06-002	중국투자의 현주소와 성공전략 세미나	2006.8
06-003	한미 FTA, 새로운 대미진출 기회와 활용방안	2006.10
06-004	알제리 투자진출 설명회	2006.11
06-005	요르단 투자환경 설명회	2006.11
06-006	중국 유통책임자 초청 내수시장 설명회	2006.12

□ 산업연구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2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3	폴란드의 주요 산업	2006.8
06-00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산업	2006.8

◆ 작성자

통상전략팀 추경애

뉴델리무역관

도쿄무역관

멕시코시티무역관

모스크바무역관

방콕무역관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브뤼셀무역관

상파울루무역관

상하이무역관

시드니무역관

오클랜드무역관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워싱턴무역관

이스탄불무역관

자카르타무역관

카라치무역관

카이로무역관

퀼라룸푸르무역관

타이베이무역관

토론토무역관

2006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7년도 전망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6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